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제1장 개 요

I. 세입·세출 결산	1
1. 세입 결산	1
2. 세출 결산	4
1) 세출 총괄	4
2) 세출예산 전용내역	5
3) 세출예산 불용내역	6
4) 세출예산 이월내역	7
II. 재무제표	13
1. 재정상태표	13
2. 재정운영표	14
3. 순자산변동표	15
III. 성과보고서	16
1. 성과체계	16
2. 2022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8

제2장 검토의견

1. 예산 집행절차 적절성 제고 필요	21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29
3.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6
4.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40
5.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조직개편 취지에 적합하도록 인사 제도개선 필요	46
6.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계약법령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54
7.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영상회의 장비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58
8.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63
9. 공정거래지원: 지출원인행위 관련 행정절차 지연 주의	67
10. 행정소송수행: 과징금 환급업무 조기 완료 필요	72
11. 한국소비자원 출연	78
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91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01

제1장 개요

I.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 2023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4,216억 9,600만원임.
8,538억 8,8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5,560억 3,100만원이 수납되고,
2,975억 5,4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3억 2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31.8% 수준임.

〈2023회계연도 세입 실적〉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상	순수 ¹⁾
합 계	421,696	853,888	556,031	302	297,554	90,060
재산수입	5	3	1	-	2	2
- 기타재산수입	5	3	1	-	2	2
경상이전수입	421,691	853,882	556,029	302	297,552	90,058
- 과 정 금	417,067	837,557	552,104	302	285,151	78,006
- 과 태 료	2,665	4,031	2,165	-	1,866	1,749
- 위 약 금	1	-	-	-	-	-
- 가 산 금	415	10,245	326	-	9,919	9,711
- 기타경상이전수입	1,543	2,041	1,434	-	607	583
- 징계부가금	-	8	-	-	9	9
잡수입	-	1	1	-	-	-
- 기타잡수입	-	1	1	-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 순수미수납액(임의채납액)

□ 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과징금 수입이 5,521억 4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대부분(99.3%)을 차지하고 있음.

○ 과징금 수입은 철근사업자(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11개 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2,565억원)²⁾, 구글엘엘씨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421억원),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271억원) 등에서 기인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6억 4,963만원) 등에서 기인함.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른 소송비용의 환수 등(10억 7,800만원)이며, 가산금 수납액은 3억 2,6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수납액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과징금	과태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가산금	기타	합계
552,104 (99.29)	2,165 (0.39)	1,434 (0.26)	326 (0.06)	2 (0)	556,031 (10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납기미도래액이 1,778억 1,900만원, 파산·폐업 또는 무재산 등에 따른 임의채납액이 900억 6,000만원 등임.

2) 2022년 말에 부과되어 2023년 초에 납부

- 전체 미수납액의 95.8%에 해당하는 2,851억 5,153만원이 과징금이며, 그 중 납기미도래액이 1,776억 7,959만원, 징수유예액 294억 6,500만원, 임의체납액은 780억 694만원임.
- 과태료의 경우 납기미도래액이 1억 1,640만원, 임의체납액이 17억 4,946만원이고, 그 밖에 소송비용환수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가산금, 기타재산수입 및 징계부가금에서 기인한 미수납액은 105억 3,757만원임.

〈2023회계연도 세입 미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미수납 사유	미수납액
과징금 (공정거래법 등 위반)	○ 납기 미도래	177,679
	○ 징수유예(집행정지)	29,465
	○ 임의체납(폐업,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78,006
소 계		285,151
과태료 (공정거래법 등 위반)	○ 납기 미도래	116
	○ 징수유예(집행정지)	-
	○ 임의체납(폐업,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1,749
소 계		1,866
가 산 금	○ 임의체납(폐업,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9,919
기타경상이전수입	○ 납기 미도래	24
	○ 임의체납(폐업,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	583
기타재산수입	○ 임의체납	2
징계부가금	○ 임의체납(체납자 재력부족 등)	9
소 계		10,537
합 계		297,55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세출 결산

1) 세출 총괄

□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1,596억 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9억 6,300만원 등을 합한 예산현액 1,618억 3,600만원 중 97.8%인 1,583억 2,000만원이 집행되고, 1.2%인 18억 8,000만원은 이월되고 1.0%인 16억 3,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을 경비별로 살펴보면, 전체 집행액의 32.5%인 514억 1,900만원이 인건비로 집행되었고, 6%인 93억 4,100만원은 기본경비로, 61.5%인 975억 6,000만원은 사업비로 각각 집행되었음.

〈2023 회계연도 세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경비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증감	전용 증감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C)	비율	
									B/A	C/A
합 계	159,603	1,963	270	1,621 △1,621	161,836	158,320	1,880	1,636	97.8	1.0
인건비	51,817	-	-	△115	51,702	51,419	-	283	99.5	0.5
기본 경비	9,291	-	270	439 △324	9,676	9,341	-	335	96.5	3.5
사업비	98,495	1,963	-	1,182 △1,182	100,458	97,560	1,880	1,018	97.1	1.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세출예산 전용내역

□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16억 2,200만원으로 주요 전용 발생 사유는 감사원 국가결산검사에 따른 조치결과,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및 국내·국외업무여비 부족분 충당 등에 따른 것임.

〈2023 회계연도 세출 예산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구체적 전용 사유	금 액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 감사원 국가결산검사 조치결과에 따른 전용 ³⁾	978
사업량 증가	○ 일용임금(청년인턴 보수지급) 부족분 충당	115
	○ 직제개편에 따른 이사비, 사무실 공사비, 사무집기 부족분 충당	242
	○ 국내·국외업무여비 집행액 부족분 충당	233
	○ 고용부담금 집행액 부족분 충당	19
	○ 신고포상금 집행액 부족분 충당	11
	○ 행정소송수행 배상금 부족분 충당	7
	○ 기업집단감시국 사익편취행태개선 사업 일반연구비 부족분 충당	7
	○ 2023년 데이터 포털 구축 및 운영 조달수수료 부족분 충당	6
	○ 국제부담금 집행액 부족분 충당	4
합 계		1,62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지식기반의 조사 용역에 해당하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의 예산을 일반연구비(260-01목)가 아닌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세출예산 불용내역

-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인 16억 3,600만원으로 집행잔액에 해당함.

〈2023 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유 형 별	구 체 적 불 용 사 유	금 액
집행잔액	○ 기타 집행잔액	1,636
합 계		1,63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4) 세출예산 이월내역

□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이월액은 18억 8,000만원으로 구체적인 발생사유는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임.

〈2023년도 세출 예산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 예산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이월 사유
				명시이 월	사고이 월		
합 계	3,998	5,601	3,694	0	1,880	28	
일반회계	3,998	5,601	3,694	0	1,880	28	
010장(분야) 일반·지방행정	3,998	5,601	3,694	0	1,880	28	
016관(부문) 일반행정	3,998	5,601	3,694	0	1,880	28	
1200항(프로그램) 경쟁촉진	185	222	204	0	9	9	
1251세항(단위사업) 독과점시장환경개선	185	222	204	0	9	9	
260목 연구용역비	185	222	204	0	9	9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7000항(프로그램) 공정거래행정지원	3,813	5,380	3,490	0	1,871	18	
7002세항(단위사업) 공정위 정보화	3,813	5,380	3,490	0	1,871	18	
260목 연구용역비	3,813	5,380	3,490	0	1,871	18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총 계	141,682	154,841	159,603	158,320	99.2	158,429
1200 경쟁촉진	15,388	19,000	20,980	20,824	99.3	20,246
1231 선진경쟁정책추진	1,712	1,552	2,258	2,203	97.6	1,790
정책연구개발사업 (1231-310)	367	391	363	359	98.9	349
대외활동강화 (1231-311)	531	306	457	444	97.2	394
개도국기술지원 (1231-312)	77	102	72	63	87.5	78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1231-503)	736	753	1,366	1,336	97.8	969
1241 카르텔대응강화	257	283	366	357	97.5	391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257	283	366	357	97.5	391
1251 독과점시장환경개선	3,777	5,650	5,683	5,677	99.9	5,331
독과점시장감시체계운영 (1251-330)	2,585	3,436	3,670	3,695	100.7	3,320
사익편취 행태개선 (1251-331)	300	321	370	360	97.3	370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1251-332)	891	1,893	1,643	1,622	98.7	1,641
1261 시장구조개선	209	539	1,016	930	91.5	992
규제개선및경제분석 (1261-340)	209	539	1,016	930	91.5	992

구 분	2021 결 산	2022 결 산	2023			2024 예 산
			예 산(A)	결 산(B)	집 행 률 (B/A)	
1271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출연	9,433	10,976	11,657	11,657	100.0	11,74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출연 (1271-350)	9,433	10,976	11,657	11,657	100.0	11,742
1300 중소기업경쟁여건	2,582	2,317	2,466	2,435	98.7	3,313
1331 대중소기업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2,582	2,317	2,466	2,435	98.7	3,313
대중소기업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1331-400)	1,405	1,433	1,479	1,461	98.8	2,326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1331-401)	1,176	884	987	974	98.7	987
1400 소비자후생 증진	56,121	60,105	60,750	60,087	98.9	60,511
1431 선진소비자정책추진	850	1,018	1,171	1,159	99.0	1,389
선진소비자정책추진 (1431-600)	850	1,018	1,171	1,159	99.0	1,389
1441 소비자권익증진지원	2,221	2,995	3,018	2,748	91.1	1,234
소비자권익증진지원 (1441-610)	2,221	2,995	3,018	2,748	91.1	1,234
1451 소비자보호 인프라운용	5,700	5,752	5,708	5,327	93.3	5,046
소비자상담센터운영 (정보화)(1451-620)	4,407	4,016	3,888	3,561	91.6	3,628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운영 (1451-621)	1,293	1,736	1,820	1,766	97.0	1,418
1461 한국소비자원출연	47,350	50,341	50,853	50,853	100.0	52,842
한국소비자원출연 (1461-630)	47,350	50,341	50,853	50,853	100.0	52,842
7000 공정거래행정지원	67,593	73,395	75,407	74,974	99.4	74,359
7001 인건비	48,377	50,287	51,817	51,419	99.2	53,650

구 분	2021 결 산	2022 결 산	2023			2024 예 산
			예 산(A)	결 산(B)	집 행 륜 (B/A)	
총액인건비성인건비 (7001-100)	48,377	50,287	51,817	51,419	99.2	53,650
7011 기본경비	8,608	9,284	9,291	9,341	100.5	8,921
기관운영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0)	3,064	3,054	3,194	3,082	96.5	3,207
심판관리관실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1)	25	55	71	66	93.0	72
기획조정관실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2)	40	34	36	34	94.4	66
경쟁정책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3)	16	15	20	19	95.0	26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4)	18	17	16	10	62.5	17
소비자정책국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5)	28	25	27	18	66.7	20
시장감시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6)	24	21	20	26	130.0	20
카드텔조사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7)	68	74	78	72	92.3	83
기업거래정책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8)	23	20	23	20	87.0	23
서울사무소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9)	287	262	269	268	99.6	280
부산사무소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0)	82	99	84	111	132.1	90
광주사무소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1)	65	75	70	74	105.7	70
대전사무소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2)	55	62	59	66	111.9	59
대구사무소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3)	51	61	56	65	116.1	56
기업집단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4)	63	63	62	62	100.0	58

구 분	2021 결 산	2022 결 산	2023			2024 예 산
			예 산(A)	결 산(B)	집 행 륜 (B/A)	
유통정책관실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5)	18	16	16	27	168.8	27
기관운영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0)	1,258	1,563	1,541	1,827	118.6	1,552
심판관리관실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1)	546	345	425	438	103.1	514
기획조정관실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2)	555	605	604	541	89.6	730
경쟁정책국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301	411	467	408	87.4	371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4)	89	70	69	70	101.4	175
소비자정책국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5)	145	176	181	143	79.0	145
시장감시국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6)	43	51	62	84	135.5	119
카르텔조사국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7)	56	84	117	102	87.2	132
기업거래정책국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8)	52	54	64	98	153.1	80
서울사무소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9)	1,018	1,412	696	686	98.6	199
부산사무소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0)	168	199	519	484	93.3	218
광주사무소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1)	71	55	73	71	97.3	95
대전사무소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2)	92	64	78	77	98.7	87
대구사무소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3)	63	54	76	75	98.7	85
기업집단국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4)	152	119	136	117	86.0	134

구 분	2021 결 산	2022 결 산	2023			2024 예 산
			예 산(A)	결 산(B)	집 행 륜 (B/A)	
유통정책관실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5)	74	75	82	101	123.2	111
7031 행정지원	6,314	6,160	6,413	6,380	99.5	6,829
공정거래지원 (7031-300)	928	873	819	811	99.0	1,389
행정소송수행 (7031-301)	3,288	3,166	3,279	3,278	100.0	3,286
전산운영경비 (7031-302)	2,099	2,121	2,315	2,291	99.0	2,154
7032 공정위 정보화	4,293	6,095	7,886	7,833	99.3	4,959
정보화기반확충 (7032-501)	1,863	3,454	2,663	2,658	99.8	3,472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정보화) (7032-502)	2,430	2,641	5,223	5,175	99.1	1,48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II.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당기 자산은 전기 대비 약 59.9% (△270억원) 감소한 1,812억원으로, 이는 과징금 등 제재금수익 징수 결정액 감소에 따른 미수채권의 순감소(△2,719억원) 등에 기인함.
- 부채는 전기 대비 2,889.2%(270억원) 증가한 279억원으로, 전부 장기충당 부채임.

〈2023년도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A-B)	
			금 액	증 감 율
자 산	181,184	451,405	△270,221	△59.9
부 채	27,889	933	26,956	2,889.2
순자산	153,295	450,472	△297,177	△66.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재정운영표

- 당기 재정운영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 대비 약 4.2%(34억원) 증가한 840억원인데, 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 증가 등 경쟁촉진 증가(25억원), 한국소비자원 출연금 등 소비자후생 증진 증가(7억원) 등에 기인함.
- 관리운영비는 전기 대비 5.7%(43억원) 증가한 799억원으로, 이는 지급 단가 인상 및 편성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13억원), 복리후생비 및 외주용역비 경비 증가(31억원) 등에 기인함.
- 비배분비용은 전기 대비 28.9%(124억원) 증가한 552억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대손상각비 감소(△167억원), 이자비용 감소(△100만원), 소송충당부채전입액 등 기타비용 증가(290억원) 등임.

〈2023년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022년(B)	증 감 (A-B)	
			금 액	증감률
I. 프로그램순원가	84,013	80,618	3,395	4.2
II. 관리운영비	79,941	75,624	4,317	5.7
III. 비배분비용	55,202	42,833	12,369	28.9
IV. 비배분수익	1,334	60,459	△59,125	△97.8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217,821	138,616	79,205	57.1
VI. 재정운영결과	217,821	138,616	79,205	57.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 순자산변동표

- 기말 순자산은 전기 대비 2,972억원 감소한 1,533억원 수준으로 이는 기초순자산 4,505억원, 순자산변동표의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 2,178억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792억원 등으로 구성됨.

〈2023년 순자산변동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A-B)	
			금 액	증감률
I. 기초 순자산	450,472	410,168	40,304	9.8
II. 재정운영결과	217,821	138,616	79,205	57.1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79,159	178,959	△258,118	△144.2
IV. 조정항목	△198	△39	△159	△407.7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153,295	450,472	△297,177	△66.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III. 성과보고서

1. 성과체계

- 공정거래위원회 임무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며, 비전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공정경제 구현”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체계는 3개의 전략목표와 4개의 프로그램 목표, 1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성과체계 현황〉

구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3	4	12	10	2	-
비율(%)	100%	100%	100%	83.3%	16.7%	-

성 과 목 표	단 위 사 업	분 야
---------	---------	-----

전략목표Ⅰ :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프로그램목표Ⅰ-1 :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1) 선진 경쟁정책 추진	일반재정
	(2)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일반재정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일반재정
	(4) 카르텔대응강화	일반재정
	(5) 시장구조개선	일반재정
프로그램목표Ⅰ-2 :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1) 행정지원	일반재정
	(2) 공정위 정보화	정 보 화

전략목표Ⅱ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Ⅱ-1 :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1)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일반재정
---	------------------------------	------

전략목표Ⅲ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1) 선진 소비자정책 추진	일반재정
	(2)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일반재정
	(3)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정 보 화
	(4) 한국소비자원 출연	일반재정

2.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는 4개 프로그램 목표에 총 10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달성(100~130% 미만)은 9개, 초과달성(130% 이상)은 1개임.⁴⁾

〈성과목표별 달성 현황〉

구 분	2022 달성	2023 달성	2023결산 (억원)
전략목표Ⅰ: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Ⅰ-1)			208
· 경쟁제한적 행태 및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나 관행 개선 건수(단위:건)	○	◎	-
· 디지털증거 분석사례 비율(단위:%)	X	○	-
·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액(단위:백만원)	X	○	-
□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Ⅰ-2)			119
·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단위:%)	○	○	-
·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단위:%)	○	○	-
전략목표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Ⅱ-1)			24
·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건수 (단위:건)	○	○	-
· 동반성장 문화 확산도(단위:점)	○	○	-
전략목표Ⅲ: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Ⅲ-1)			601
·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건수 (단위:건)	○	○	-
·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단위:%)	○	○	-
· 소비자 친화적 시장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자 개선 건수 (단위:건)	○	○	-

4) ◎ 초과달성(130% 이상), ○ 달성(100%~130%미만), X 미달성(100% 미만)

□ 단위사업별로는 전체 12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10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고, 이 중 9개는 달성(100~130% 미만), 1개는 초과달성(1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사업별 달성 현황〉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지표 유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1년	'22년	'23년
--------	------	-------	----------------------	-----------------	------	------	------

전략목표 I :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한다

프로그램목표 I - 1 :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① 경쟁제한적 행태 및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나 관행 개선 건수(건)	결과	법령, 고시, 지침, 모범거래기준, 공정경쟁규약 제·개정(안) 마련 건수	목표	5	5	5
				실적	7	5	8
				달성률	140%	100%	184%
	② 디지털증거 분석사례 비율(%)	결과	현장조사지원사건수와 디지털포렌식조사로 입수한 디지털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보고서 작성건수의 비율	목표	-	62.6	63.5
				실적	63.2	58.3	79.6
				달성률	-	93.1%	125.4%
	③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액(백만원)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종료된 사건의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목표	120,727	120,727	115,415
				실적	103,030	94,698	130,897
				달성률	85.3%	78.4%	113.4%
프로그램목표 I - 2 :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①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	산출	최근 5개년간 누적소송종결사건의 전부승소 사건수/최근 5개년간 누적소송종결사건 수	목표	72.0	73.5	73.7
				실적	82	73.9	74.1
				달성률	113.9%	100.5%	100.5%
	②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	결과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50%)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성과 달성도(50%) 27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목표	신규	85.2	89.2
				실적	신규	88.8	90.9
				달성률	-	104.2%	101.9%

전략목표 II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 II : 중소기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①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수(건)	결과	분야별 제도*개선 건수 = 하도급 분야 + 가맹 분야 + 유통 분야 + 대리점 분야	목표	9	9	10
				실적	9	9	10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지표 유형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1년	'22년	'23년
			* 법령, 고시, 지침 제·개정 건	달성률	100.0%	100.0%	100.0%
	② 동반성장문화확산도 (점)	결과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11단계로 평가하여 이를 0~100점으로 환산(단계간 10점 차 한 뒤, 세부항목별 만족도의 산술평균(70%) + 전반적인 체감만족도(30%))	목표	72.7	72.6	72.8
				실적	68.3	74.1	77.4
				달성률	93.9%	102.1%	106.3%

전략목표Ⅲ: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프로그램목표 Ⅲ : 선진적 소비자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①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건수(건)	결과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고시·지침, 운영기준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 건수	목표	6	6	7
				실적	6	6	7
				달성률	100.0%	100.0%	100.0%
	②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피해해결로 처리한 비율(소비자원 제외)	결과	취약계층 대상 안전조사 및 시험제품(시설) 수	목표	22.4	23.6	28.4
				실적	26.0	29.7	30.4
				달성률	116.1%	125.8%	107.0%
	③ 소비자 친화적 시장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자 개선 건수(건)	산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고시·지침, 운영기준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 건수	목표	신규	86	94
				실적	75	90	95
				달성률	-	104.7%	101.1%

제2장 검토의견

1. 예산 집행절차 적절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도 세출예산은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각 개별 사업비, 지역사무소 운영비 등 총 5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예산현액 1,596억 300만원 중 1,583억 2,000만원(99.2%)이 집행되고, 16억 7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B/A)	
	본예산	추경(A)			
총 계	159,603	159,603	158,320	99.2	158,429
정책연구개발사업 (1231-310)	363	363	359	98.9	349
대외활동강화 (1231-311)	457	457	444	97.2	394
개도국기술지원 (1231-312)	72	72	63	87.5	78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1231-503)	1,366	1,366	1,336	97.8	969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366	366	357	97.5	391
독과점시장감시체계운영 (1251-330)	3,670	3,670	3,695	100.7	3,320
사익편취행태개선 (1251-331)	370	370	360	97.3	370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1251-332)	1,643	1,643	1,622	98.7	1,641
규제개선및경제분석 (1261-340)	1,016	1,016	930	91.5	99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출연 (1271-350)	11,657	11,657	11,657	100.0	11,742

구분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대중소기업거래행태개선 및동반성장시책추진 (1331-400)	1,479	1,479	1,461	98.8	2,326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1331-401)	987	987	974	98.7	987
선진소비자정책추진 (1431-600)	1,171	1,171	1,159	99.0	1,389
소비자권익증진지원 (1441-610)	3,018	3,018	2,748	91.1	1,234
소비자상담센터운영(정보화) (1451-620)	3,888	3,888	3,561	91.6	3,628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운영 (정보화) (1451-621)	1,820	1,820	1,766	97.1	1,418
한국소비자원출연 (1461-630)	50,853	50,853	50,853	100.0	52,842
총액인건비성인건비 (7001-100)	51,817	51,817	51,419	99.2	53,650
기관운영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0)	3,194	3,194	3,082	96.5	3,207
심판관리관실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1)	71	71	66	93.0	72
기획조정관실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2)	36	36	34	94.4	66
경쟁정책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3)	20	20	19	95.0	26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총액 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04)	16	16	10	62.5	17
소비자정책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5)	27	27	18	66.7	20
시장감시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6)	20	20	26	130.0	20
카르텔조사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7)	78	78	72	92.3	83
기업거래정책국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8)	23	23	20	87.0	23
서울사무소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9)	269	269	268	99.6	280
부산사무소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0)	84	84	111	132.1	90
광주사무소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1)	70	70	74	105.7	70
대전사무소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2)	59	59	66	111.9	59
대구사무소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3)	56	56	65	116.1	56

구분	2023년				2024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기업집단국충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14)	62	62	62	100.0	58
유통정책관실충액인건비 성기본경비(7011-215)	16	16	27	168.8	27
기관운영비충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0)	1,541	1,541	1,827	118.6	1,552
심판관리관실비충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1)	425	425	438	103.1	514
기획조정관실비충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2)	604	604	541	89.6	730
경쟁정책국비충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467	467	408	87.4	371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비충액 인건비성기본경비 (7011-254)	69	69	70	101.4	175
소비자정책국비충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5)	181	181	143	79.0	145
시장감시국비충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6)	62	62	84	135.5	119
카르텔조사국비충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7)	117	117	102	87.2	132
기업거래정책국비충액인건비성기 본경비(7011-258)	64	64	98	153.1	80
서울사무소비충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9)	696	696	686	98.6	199
부산사무소비충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0)	519	519	484	93.3	218
광주사무소비충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1)	73	73	71	97.3	95
대전사무소비충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2)	78	78	77	98.7	87
대구사무소비충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3)	76	76	75	98.7	85
기업집단국비충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4)	136	136	117	86.0	134
유통정책관실비충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5)	82	82	101	123.2	111
공정거래지원(7031-300)	819	819	811	99.0	1,389
행정소송수행(7031-301)	3,279	3,279	3,278	100.0	3,286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031-302)	2,315	2,315	2,291	99.0	2,154
정보화기반확충(정보화) (7032-501)	2,663	2,663	2,658	99.8	3,472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정보화) (7032-502)	5,223	5,223	5,175	99.1	1,48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선집행 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예산을 운용하였음.

-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세부사업에서 세부사업내 비목의 집행금액이 부족함에도 다른 세부사업(또는 다른 비목)으로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전용절차를 통해 해당 예산을 확보한 후 지출과목을 정정하는 방식의 예산 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사업 별 예산 집행시 과목정정 현황〉

(단위: 원)

과목정정 전 지출 재원*			과목정정 후 지출 재원		
세부사업	목-세목	지출액	세부사업명	목-세목	지출액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일반수용비	2,691,000	유통 정책관실 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2,691,000
유통정책관실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1,275,000	유통정책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1,275,000
유통정책관실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국내여비	3,745,690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국내여비	3,745,690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일반수용비	4,007,700	유통정책관실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관서업무 추진비	4,007,700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국내여비	285,332	유통정책관실 비총액 인건비성	국내여비	285,332

과목정정 전 지출 재원*			과목정정 후 지출 재원		
세부사업	목-세목	지출액	세부사업명	목-세목	지출액
시책추진 유통정책관실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164,330	기본경비 유통정책관실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제세	164,330
유통정책관실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692,000	유통정책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692,000
기업집단국 비총액 인건비성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90,168	사익편취 행태개선	국내여비	2,190,168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 성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213,460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 성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제세	213,460
행정소송 수행	일반수용비	152,000	행정소송 수행	관서업무 추진비	152,000
행정소송 수행	일반수용비	165,000	행정소송 수행	관서업무 추진비	165,000
카르텔 환경개선	일반수용비	11,632,336	비총액 기본경비	국내여비	11,632,336
카르텔 환경개선	국외여비	8,839,500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국외여비	8,839,500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일반용역비	20,000,000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일반수용비	20,000,000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일반수용비	2,637,800	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임차료	2,637,800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 성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제세	988,140	소비자정책국 비총액인건비 성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988,140

* 과목정정 전 지출 재원: 지급재원 부족시 부족분을 집행한 재원(예: 국내여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여비를 우선 집행한 경우 그 금액)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운영 과정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하자 시급히 지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와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운용방식은 예산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방법으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현행 「국고금 관리법」 제20조⁵⁾에서는 ‘지출원인행위’의 경우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급원인행위’는 교부받은 관서운영경비에 의하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서 교부받은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필요한 재원을 먼저 확보한 후 지출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6조⁶⁾에 따라 예산 전용 등을 통해 먼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한 후 지출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로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배정을 신청한 후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과목정정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방식은 예산이 확보되기 전 지출행위를 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

5)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6)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국고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고금 관리법」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방식이라 할 것임.

- 더욱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 과목정정은 시스템상 실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출과목에 명백한 오류 또는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할 것임.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목정정을 통한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주의한 집행관리로 잘못된 집행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후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됨.

-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사업⁷⁾의 경우 과목정정을 통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부 정정 누락이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출장 관련 여비(220-01)가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되었음.

〈과목정정 누락 사례〉

지급일자	세부사업	건명	금액
2023.9.25.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국내여비)	카르텔조사국 국내여비 대금 지급(7~9월)	1,104,400원
2023.9.27.		지급과목 음수발생에 따른 과목정정	△1,104,400원
	카르텔환경개선 (일반수용비)	지급과목 음수발생에 따른 과목정정	1,104,400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7) 세부사업 : 카르텔조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7)

□ 상술한 바와 같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과목정정을 활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예산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미흡한 집행관리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결산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항목별 예산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 조정 등 해당 항목의 예산확보 절차를 선행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카르텔환경개선” 사업은 카르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 등을 상시 감시하여 카르텔을 예방·적발·시정하고, 급증하고 있는 입찰 담합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⁸⁾ 2023년도 예산액은 3억 6,600만원으로 200만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 3억 6,800만원 중 3억 5,700만원이 집행되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카르텔환경개선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 산
	예산액		전 년 도 이 월 액	이·전 용 등	예산현액	집 행 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카르텔 환경개선	366	366	-	2	368	357	-	11	391
카르텔 행태개선	215	215	-	2	217	209	-	8	240
-일반수용비	125	125	-	△40	85	79	-	6	125
-임차료	3	3	-	-	3	1	-	2	3
-국내여비	40	40	-	45	85	85	-	-	65
-국외업무여비	40	40	-	△3	37	37	-	-	40
-사업추진비	7	7	-	-	7	7	-	-	7
입찰질서 공정화	151	151	-	-	151	148	-	3	151
-일반수용비	89	89	-	△30	59	56	-	3	89
-국내여비	25	25	-	30	55	55	-	-	25
-관리용역비	33	33	-	-	33	33	-	-	33
-사업추진비	4	4	-	-	4	4	-	-	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8) 세부사업 : 카르텔환경개선(1241-320)

□ “유통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⁹⁾ 2023년도 예산액은 8,2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3년도 유통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유통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82	82	-	17	99	99	-	-	111
-일반수용비	44	44	-	△9	35	35	-	-	50
-공공요금및제세	10	10	-	△3	7	7	-	-	14
-국내여비	19	19	-	20	39	39	-	-	30
-국외업무여비	-	-	-	5	5	5	-	-	-
-관서업무추진비	8	8	-	4	12	12	-	-	15
-자산취득비	1	1	-	-	1	1	-	-	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년도 지급 필요 경비를 해당연도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였음.

9) 세부사업: 유통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2)

(1) 카르텔환경개선 사업(1241-320)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카르텔 감시 강화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카르텔 직권실태조사 등 관련 조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동 세부사업에서 조사업무 수행 등을 위한 2023년도 국내여비(220-01) 예산액은 6,5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 1억 4,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2023년도 카르텔환경개선사업 국내여비 결산 내역〉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카르텔행태개선	215	215	-	2	217	209	-	8	240
국내여비	40	40	-	45	85	85	-	-	65
입찰질서공정화	151	151	-	-	151	148	-	3	151
국내여비	25	25	-	30	55	55	-	-	2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런데 동 세부사업의 2023년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출장 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22.12월에 수행한 국내출장 26건과 관련한 여비 2,301,560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사례가 나타남.

〈2023년 예산으로 집행한 2022년 국내출장여비 내역〉

출장시기	집행액	건수	지급일
'22.12월	2,301,560원	26건	'23.1.2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와 같이 2022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할 지출을 2023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3조¹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절한 집행 사례임.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차례에 걸쳐 자체전용 등을 통해 국내여비 재원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카르텔 조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대규모 직권조사가 급증¹¹⁾함에 따른 것임.

〈동 세부사업 국내여비 이·전용 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3.6.26.)	카르텔조사국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일반수용비 (210-01)	20백만원	카르텔조사국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국내여비 (220-01)
내역변경 (‘23.6.27.)	시장감시국 독과점시장 감시체계운영 (1251-330)	국내여비 (220-01)	5백만원	카르텔조사국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국내여비 (220-01)
자체전용 (‘23.9.19)	카르텔조사국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일반수용비 (210-01)	20백만원	카르텔조사국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국내여비 (220-01)

10)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1) 2023년 상반기 금융분야(은행, 증권, 보험) 담합조사(3건)에 소요된 국내여비는 약 4,589만원으로 동 세부사업 국내여비 편성액 6,413만원의 71.5%에 해당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3.12.18)	카르텔조사국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일반수용비 (210-01)	30백만원	카르텔조사국 카르텔환경개선 (1241-320)	국내여비 (220-0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런데 「국가재정법」을 준수하지 않고 전년도 여비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불필요한 예산 전용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저해된 측면이 있음.

(2) 유통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65)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동 세부사업 내 자료발송 등을 위한 공공요금(210-02)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0만원을 감액 전용하여 예산현액 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3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유통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82	82	-	17	99	99	-	-	111
공공요금 및 제세	10	10	-	△3	7	7	-	-	1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런데 자료발송 등을 위한 우편요금(210-02)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22.12월에 발생한 우편요금(846,500원)을 2023년도 예산으로 지출('23.1.16.)하였음.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연도 12월에 발송한 우편요금의 경우 다음연도 1월 초에 그 대금이 청구되므로 해당연도 예산으로 지급이 어려워 매년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 집행시 관행적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활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방법은 부적절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각 중앙관서 기본경비의 경우 현행 국가재정 관련 법령 등에서는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이월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¹²⁾을 두고

12)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해당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15로 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9

(1) 기본경비 이월범위(「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59)

○ 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목을 제외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경비의 이월범위에 사고이월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복리후생비

나. 직책수행경비

있으므로, 당해연도 연말 우편요금의 경우 그 소요금액을 사전에 파악한 후 ‘기본경비 이월 제도’를 활용한다면 「국가재정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 집행시 보다 면밀히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집행함으로써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¹³⁾: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은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하도급분야의 거래행태 개선을 위하여 하도급서면실태조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영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14억 7,900만원으로 4백만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 14억 8,300만원 중 14억 6,100만원이 집행되고, 2,2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	1,479	1,479	-	4	-	1,483	1,461	-	22	2,326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1,317	1,317	-	3	-	1,320	1,299	-	21	1,65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62	62	-	1	-	63	62	-	1	574
공시위탁운영	100	100	-	-	-	100	100	-	-	10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3) 세부사업: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 시책추진(1331-400)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이 다른 거래(가맹·대리점·유통)분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정위에서 실시 중인 ‘공정거래협약¹⁴⁾ 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공정위는 내역사업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사업을 통해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런데 2023년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실적을 살펴보면, 협약체결 실적 대비 협약이행평가 실적이 52.1%로,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세부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가맹·유통·대리점거래 분야의 협약이행 평가 실적이 각각 62.5%, 96.2%, 90.9%인 점과 대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평가 실적〉

(단위: 개, '23.12월 기준)

구분	협약체결 실적					협약평가 실적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하도급분야	280	292	306	359	380	157	168	182	197	198
가맹분야	16	17	17	17	16	11	12	13	11	10
유통분야	25	27	25	25	26	23	24	24	25	25
대리점분야	-	9	11	11	11	-	-	8	10	10

※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제도는 2019.7월 도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4)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사전에 약정·이행하고, 공정위와 조정원이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

○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 기업 중 협약이행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닌 비지수기업이 다수이고, 이들 중 평가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이 많아 협약체결기업 수와 평가기업 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하고 있음.¹⁵⁾

〈최근 3년간 하도급 분야 협약체결기업 중 비지수기업 현황 및 협약평가신청 현황〉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협약체결기업	306	359	380
협약체결기업 중 비지수기업	135	178	200
비지수기업 중 협약평가 신청 기업	11	16	18
비지수기업 중 협약평가 미신청 기업	124	162	18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체결 후 공정위가 그 이행실적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주요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의 계기를 마련을 통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이행평가 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5) 협약이행평가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협약이행 평가를 받아야 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지수기업)과 달리, 평가대상기업이 아닌 기업(비지수기업)에 대한 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님.

*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임.

-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 협약이행 평가 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 평가 체계 보완,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개발 등 이행평가 참여 기업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하도급분야 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 기준〉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법인·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하도급 별점 3점 경감
우수	90점 이상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하도급 별점 2점 경감
양호	85점 이상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하도급 별점 1점 경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특히, 기업의 평가 참여 저조는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이행실적자료 작성, 평가 준비의 부담 및 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지수기업의 참여 저조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¹⁶⁾

16) 참고로, 대리점분야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협약을 체결한 기업 모두 비지수기업임에도 이행평가 참여율이 90.9%에 달하고 있음.

4. 소비자권익증진 지원¹⁷⁾: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도와 소비문화 및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 지원, 상품비교정보 생산,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소비자 교육, 청년소비자 역량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0억 1,800만원 중 27억 4,8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3,018	3,018	-	-	3,018	2,784	-	270	1,234
소비환경개선	539	539	-	-	539	539	-	-	243
상품비교정보 생산 지원	550	550	-	-	550	521	-	29	380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210	210	-	-	210	210	-	-	189
소비자교육 실행	402	402	-	-	402	360	-	42	402
청년소비자 역량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847	847	-	-	847	649	-	198	-
지역소비자행정 협력체계 구축	470	470	-	-	470	469	-	1	2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7) 세부사업: 소비자권익증진 지원(1441-610)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자율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역사업인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사업을 통해 ‘특수판매, 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 예산액은 2억 1,000만원이며 실집행액은 2억 1,000만원임.

<2023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내역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210	210	-	-	210	210 [210]	210	210 [210]	-	-
- 민간경상보조 (320-01)	210	210	-	-	210	210 [210]	210	210 [210]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현행 「소비자기본법」 제3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 기능을 부여하면서 동법 시행령¹⁸⁾에서는 소비자,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가 자율적 분쟁조정을

18)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자율적 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¹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²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²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개별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시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 전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²⁾

- 이러한 각 개별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기구로는 ‘① 한국소비자원, ② 시·도지사가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③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가 해당함.

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협의체를 말하며, 이하 “소비자단체협의체”라 한다)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단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9)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요청) ① 행정청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으면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특수판매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20) 제41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요청)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으면 제3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21)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요청)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이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22) 참고로,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외부연계형 조정제도를 통해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고 있음.

소비자분쟁조정기구 중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인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²³⁾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기구로서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율분쟁조정위원 40명, 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국(4명²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보고서를 살펴보면, 최근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처리건수 등 그 실적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내역〉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개최 횟수	23회	24회	24회	22회	
접수건수	675	844	454	368	
처리건수 (진행중)	813 (101)	945 (94)	549 (38)	407 (20)	이월건수 포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그 주된 원인으로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의뢰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보조금의 지급·관리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2021년 이후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의뢰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임.

23)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로 현재 12개의 회원단체가 소속되어 있음.

24)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간사 2명

〈분쟁조정 의뢰기관별 분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등)	소비자단체	서울중앙 지방법원	기타 (직접, 온라인)	계
2020년	89건	45건	178건	14건	349건	675건
2021년	-	48건	163건	26건	607건	844건
2022년	-	24건	91건	24건	315건	454건
2023년	-	57건	82건	39건	190건	368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지원을 통하여 시간·비용·정보 등의 부족으로 소송을 제기할 처지가 어려운 소액의 다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동 제도의 실효성이 감소할 경우 민사분쟁인 소비자분쟁이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는 등 소비자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보조금 지급·관리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특히 소비자단체 및 당사자 등의 의뢰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 자율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 감소와 더불어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성립건수 또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분쟁조정 처리결과별 현황〉

구분	종결사건 (진행중 사건 제외)	조정성립	법원 외부 조정성립	조정전 당사자 합의	합의율
2020년	712	46	5	231	39.6%
2021년	851	58	5	207	31.7%
2022년	511	35	8	145	36.7%
2023년	387	29	10	84	31.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이러한 분쟁조정 성립 건수 감소는 소비자분쟁 해결에 대한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제공한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 감소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분쟁조정 의뢰 및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자율분쟁 조정의 실적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²⁵⁾: 조직개편 취지에 적합하도록 인사 제도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2억 5,600만원 중 30억 8,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7,5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3,194	3,194	-	62	3,256	3,082	-	175	3,20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3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여 법집행의 공정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전문직위 운용 활성화, 대외명칭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5) 세부사업: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0)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및 각 지방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 편성된 특정업무경비(250-03)를 통해 ‘조사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집행하고 있음.

○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며,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계좌이체를 통해 정액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집행지침에 따라 조사(A등급), 징수(B등급), 상담·심결·소송·사건처리시스템 운용(C등급) 등 사건업무 관련 부서의 과장급 이하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일할 계산하여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건처리 업무와 무관한 정책·인사·감사·홍보·비서·운전 등 업무 직원은 조사활동비 월정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23.4.14)에 따라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조사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조사활동비 월정액 지급 인원을 조정(512명 → 431명)하는 동시에 등급별 기준단가를 각 3만원씩 인상하여 조사활동에 따른 정상적 소요 경비가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23년 조사활동비 개인별 월정액 집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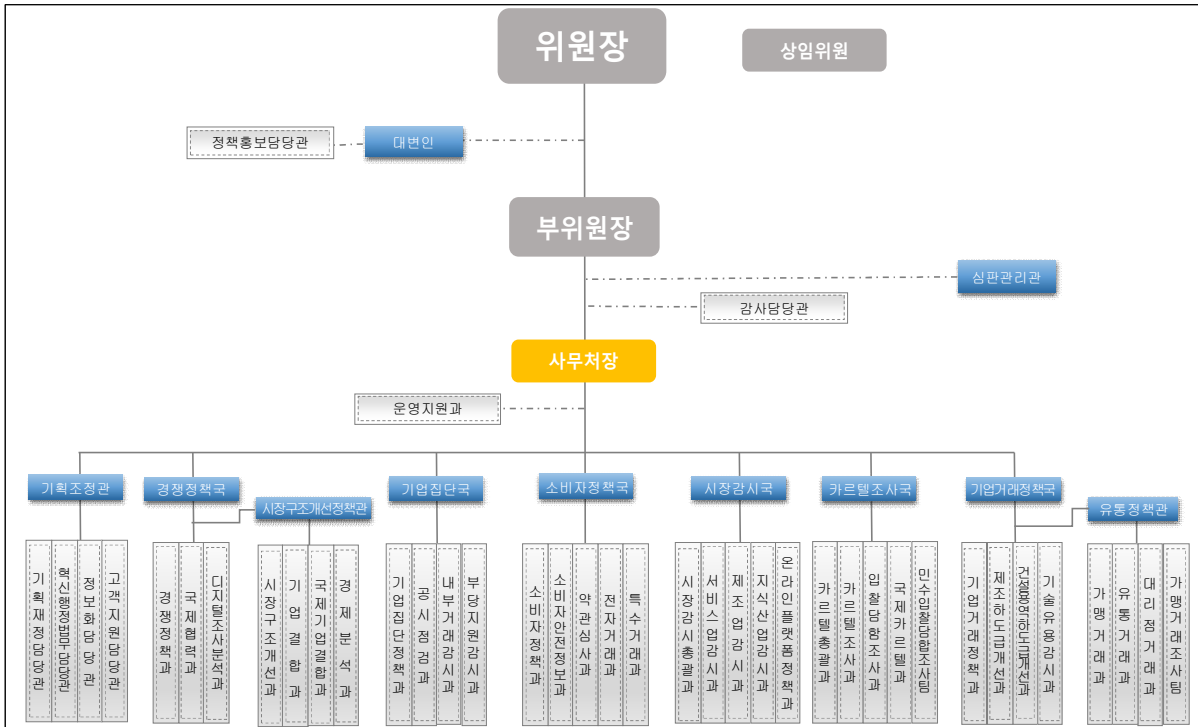
※ 조직개편('23.4.14) 전후인 3월과 5월의 대상자 수(현원)를 기준으로 작성
(단위: 명, 천원, 월)

구분	대상자(①)	등급	월 단가(②)	기간(③)	총액(④=①X②x③)
조직개편 전 (1/1-4/13)	조사(385)	A	210	3.5	282,975
	징수 등(49)	B	170	3.5	29,155
	기타(78)	C	100	3.5	27,300
	①소계(512)	-	-	-	339,430
조직개편 후 (4/14-12/31)	조사(361)	A	240	8.5	736,440
	징수(9)	B	200	8.5	15,300
	기타(61)	C	130	8.5	67,405
	②소계(431)	-	-	-	819,145
③인사변동에 따른 조정*					(40,177)
④실제 총 집행액(①+②-③)					1,118,398

* 월 중 휴직, 교육파견, 복직 등에 따른 실 근무기간(월별 일할계산 등)을 반영한 12개월 집행액 감소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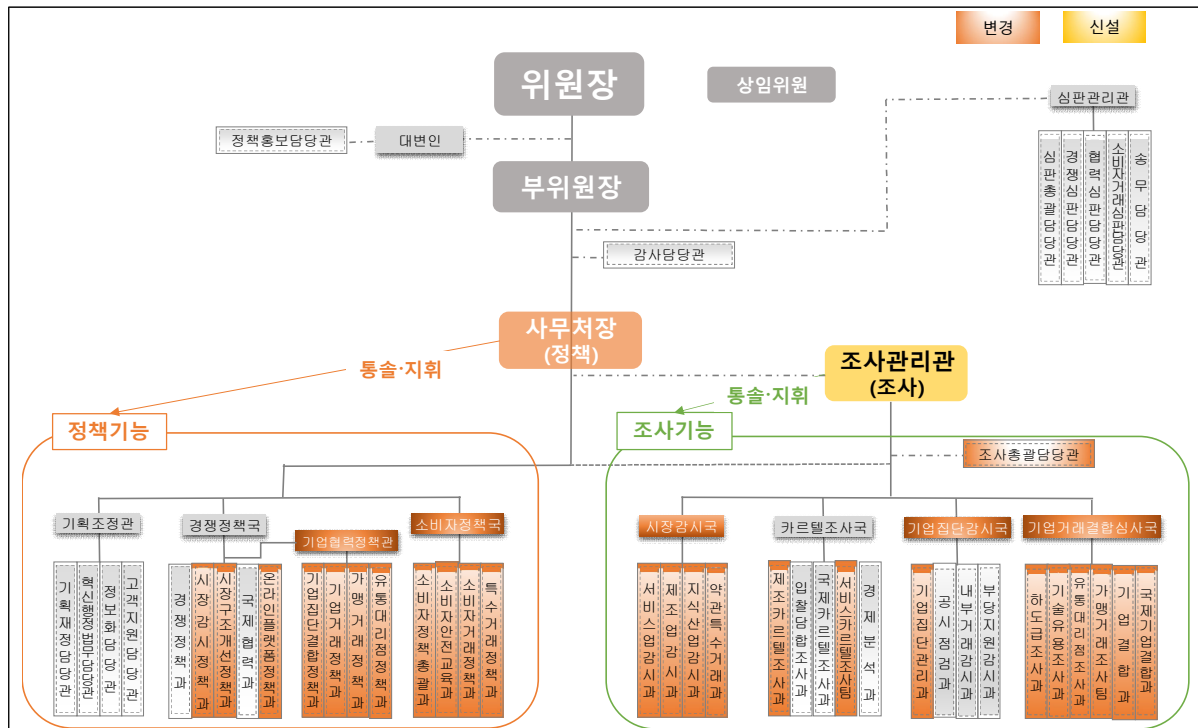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4월 실시된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를 조사부서와 정책부서로 이원화하고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조사관리관(신설)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도록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였으며 그 목적을 기능별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여 법집행의 공정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개편 이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개편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다만, 실질적인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위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함.

○ 전문직위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²⁶⁾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4년(과장급 3년)간 전보가 금지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72개 전문직위를 지정²⁷⁾하고 있는데 이 중 49개 직위에만 전문관을 보임하고 있으며, 과장급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최근 5년간 전문관을 보임하지 아니하였음.

26)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

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군(이하 “전문직위군”이라 한다)에서는 8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 전보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⑤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7) 전문직위 지정 현황 : (2022년)76개 → (2023년)71개 → (2024년)72개

- 조직개편에 따른 정책·조사 기능의 분리를 기준으로 전문직위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기능(경쟁정책국,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에서는 12개 전문직위 중 6개 직위에 전문관을 임용하였고, 조사기능(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는 42개 전문직위 중 28개 직위에 전문관을 임용하였으며, 심판·행정 등의 기능에는 18개 전문직위 중 15개 직위에 전문관을 임용하였음.

〈전문직위 운용 및 전문관 보직 현황(기능별 분류)〉

(2024. 8. 기준)

구분(기능)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	전문관 미선발
정책	12	6(50%)	6(50%)
조사	42	28(67%)	14(33%)
심판·행정 등	18	15(83%)	3(17%)
합 계	72	49(68%)	23(32%)

〈전문직위 운용 및 전문관 보직 현황(직급별 분류)〉

(2024. 8. 기준)

구분(기능)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	전문관 미선발
과장급	4	0(-)	4(100%)
4급~5급	15	12(80%)	3(20%)
5급	31	23(74%)	8(26%)
5급~6급	1	1(100%)	0(-)
6급이하	21	13(62%)	8(38%)
합 계	72	49(68%)	23(3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2020년²⁸⁾ 및 2022년²⁹⁾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직위제도 운영 부적정으로 기관 주의 처분을 하였음.

○ 전문직위 제도는 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오랜기간 근무하며 경험과 식견을 축적하고 직무전문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개편 또한 기관의 전문성·책임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직위 지정 확대·전문관 선발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외명칭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6급이하 직원의 대외명칭을 ‘조사관’으로 통일³⁰⁾하고 있는데 정책과 조사로 기능을 구분한 조직개편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사기능 외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조사관’ 명칭은 타 부처와 동일하게 ‘주무관’ 등 명칭³¹⁾으로 변경을 검토할

28)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면서, 전문관 선발비율이 낮고, 전문직위 취지에 맞지 않는 자를 보직하는 등 제도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해 주의를 촉구하오니,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 관련 보직인사 등 전문직위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9)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문직위 운영을 하면서, 전문관 선발 비율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전문관 직위에 전문관 보임 의사가 없는 자를 보직하게 하는 등 전문관 인사관리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해 “주의”를 촉구하오니, 직위 지정 및 선발 등 전문직위제도 운영 전반을 제도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0)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8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공정위 6급(상당)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조사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 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31)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 개편의 취지에 적합하게 전문직위 운영 활성화, 대외명칭 개편 등 인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업무분야별·직렬별·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

6.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³²⁾: 계약법령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23년도 예산현액 19억 700만원 중 18억 2,700만원이 집행되고, 8,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541	1,541	-	96	270	1,907	1,827	-	80	1,55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관리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경쟁절차 없이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단년도 계약으로 다년간 예산을 지출하였음.

32) 세부사업: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0)

□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에는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 대상이 되는 경비를 제외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관서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됨.

□ 2023년도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집행액은 18억 2,700만원으로, 이 중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임차 청사 관리비, 전화통신 유지보수료, 물품관리 유지보수료 등의 용도로 1억 4,700만원을 집행함.

〈2023년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세부 집행내역	집행액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임차 청사 관리비	80,863
	임차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3,575
	전화통신 유지보수료	19,920
	통신선로 유지보수비	3,718
	물품관리 유지보수료	36,893
	시설장비 수리비 등	1,632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이 중 물품관리 유지보수는 위원회 물품 유지보수 및 재물조사, 위원회 대회의실 방송장비 운영 관리, 지방사무소 물품마감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함.

〈물품관리 유지보수 계약 세부내역〉

계약방식	계약금액	계약기간	과업내용
수의계약	월 3,074,400원 총 36,892,800원	2021.11.1. ~ 2022.10.31. ※ 1년 자동연장	- 위원회 물품 유지 보수 및 재물조사 - 물품 결산(마감) 및 물품감사 대비 - 지방사무소 물품마감 지원 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러나 물품관리 유지보수 계약은 추정가격³³⁾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1월에 2022년 10월 종료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종료 1개월 전에 ‘고용주’의 서면통지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계약 된다.”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2023년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에서 선택한 금액
 - 가.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개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 동 조항 및 이를 근거로 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도록 한 「국고금 관리법」³⁴⁾과도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³⁵⁾

□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은 계약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계연도에 따라 계약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한 집행이라고 하겠음.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관련 규정 숙지를 위한 교육 등 집행체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4)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35) 2023년도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년도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체결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겠음.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7.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³⁶⁾: 영상회의 장비 활용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심판관리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일반수용비·공공요금·임차료·여비·관서업무비·자산취득비)로, 2023년도 예산현액 4억 3,900만원 중 4억 3,8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425	425	-	14	439	438	-	1	51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3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심판정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활용 성과가 없고 영상장비를 활용한 심의에 관한 규정정비도 미흡하므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36) 세부사업: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1)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보좌기관으로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보좌·관리하고 과징금·시정조치·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정 집행수단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³⁷⁾.

○ 심판관리관실은 위원회의 심리·의결이 이루어지는 심판정 유지·보수도 담당하고 있으며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심판정과 서울(과천)에 위치한 서울심판정 모두 심판관리관실 소관임.

□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심판정에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사비 997만원, 자산취득비 8,999만원 등 약 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예산 집행 내역〉

구분	주요내용	합계
공사비	자재비: 4,994,000원, 노무비: 4,076,490원, 부가가치세 907,049원	9,970,000원
자산취득비	영상회의 방송설비: 76,411,800원, 화면공유시스템: 13,576,700원	89,988,500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3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의2(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 의사일정의 수립 및 회의록의 작성·유지
2.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리·의결의 보좌 및 의결서의 작성·통지
3. 과징금,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의 관리
4. 이의신청 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5.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6. 그 밖에 위원회 심리·의결사항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해외 거주 중인 참고인 또는 피심인,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피심인 등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피심인의 방어권을 수월하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분야 법률전문가 대상 간담회에서 원격영상심의시스템 사용 안내를 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어 향후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나 2023년 9월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2024년 5월까지 영상회의를 실시한 실적이 없으며, 2024년 6월 및 7월 각 1건의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음.

□ 한편, 통계청(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47% 가량의 기업이 경기도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심판정을 총 90회의 회의 중 27회에만 활용하여 그 이용 실적이 많지 않으므로, 서울심판정에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종심판정과 서울심판정을 화상으로 연결한 위원회 심리절차 진행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심리·의결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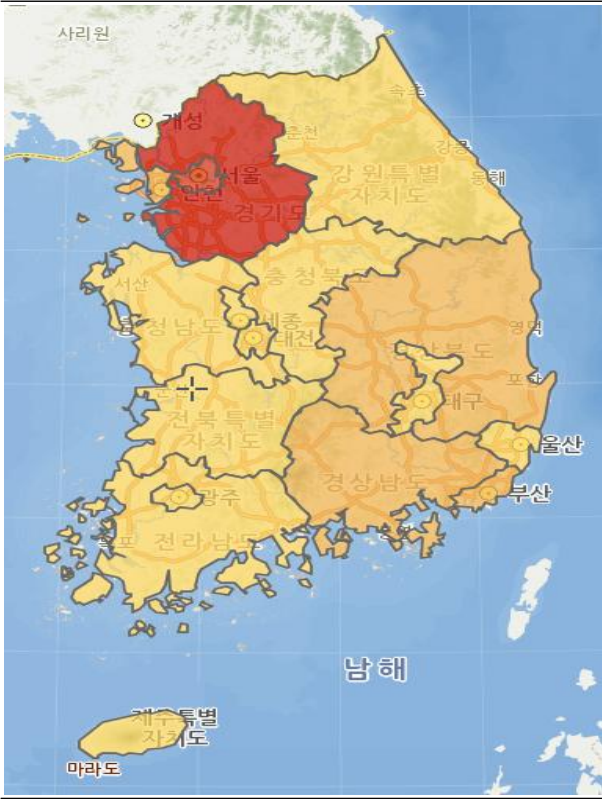
〈서울심판정 및 세종심판정 회의 실적〉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합 계
2023년	서울심판정	3회	24회	27회(30%)
	세종심판정	27회	36회	63회(70%)
	합 계	30회	60회	90회(100%)
2022년	서울심판정	2회	20회	22회(29%)
	세종심판정	22회	33회	55회(71%)
	합 계	24회	53회	77회(100%)
2021년	서울심판정	5회	16회	21회(23%)
	세종심판정	22회	49회	71회(77%)
	합 계	27회	65회	92회(100%)

* 안전구분에 관계없이 회의차수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전국 기업* 분포 현황(2022년)〉

	지역	기업수(개)	분포
	경기도	2,921,077	26.67%
	서울특별시	2,281,195	20.83%
	부산광역시	655,231	5.98%
	경상남도	640,938	5.85%
	인천광역시	604,741	5.52%
	경상북도	522,430	4.77%
	충청남도	452,919	4.14%
	대구광역시	451,531	4.12%
	전라남도	395,294	3.61%
	전라북도	380,490	3.47%
	강원특별자치도	334,943	3.06%
	충청북도	324,718	2.97%
	대전광역시	279,368	2.55%
	광주광역시	278,898	2.55%
	울산광역시	189,315	1.73%
	제주특별자치도	177,469	1.62%
	세종특별자치시	60,949	0.56%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타기업을 모두 포함함

자료: 통계청(통계지리정보서비스-기업생태분석지도)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³⁸⁾, 피심인은 위원회(의장)로부터 심의개최의 일시·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도록 하며³⁹⁾, 각 심의기일에는 피심인이 출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⁴⁰⁾, 영상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피심인의 출석 장소를 어디로 통보하여야 하는지, 피심인이 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한 장소를 ‘심판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규정이 미비한 바,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심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⁴¹⁾.

□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심판정과 서울심판정을 연결할 수 있는 원격심의회 시스템 구축하여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피심인은 서울심판정에 출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은 세종심판정에 위치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등의 심판절차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피심인의 원격 출석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8) 제35조(심의부의) ②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심판정에서 심의한다.

39) 제37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① 의장은 심의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회의 구성위원 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 심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당사자·이해관계인 등과의 기일 조정에 있어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 제40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①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해당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또한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직원(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 제외)은 심사관을 보조하여 심의에 참가하여 의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1) 참고로, 사건절차로서 심의 외 의견청취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한 의견청취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동 규칙을 개정한 바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의견청취절차의 일시 지정 등) ③ 주심위원 등은 피심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시설을 통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8.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⁴²⁾: 예산 집행 절차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23년도 예산액은 4억 6,7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 4억 3,700만원 중 4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467	467	-	△30	437	408	-	29	37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사 개최를 위한 용역계약 시 사후계약 체결로 국가계약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음.

42) 세부사업: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53)

□ 2023년도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중 일반용역비 (210-14)의 경우 예산액 5,000만원 중 2,200만원이 집행되고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일반용역비 집행액(2,200만원)은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 행사 대행 용역’에 대한 지급 용도로 사용되었는데,⁴³⁾ 동 금액은 업무보고 행사 준비 업체가 산정한 행사용역 비용인 1억 6,000만원을 주관 부처인 법무부가 1/n(8개 부처) 비용인 2,200만원을 제안하여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금액임.

〈2023년 ‘경쟁정책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중 일반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집행내역	계약기간 ⁴⁴⁾	집행액	업무보고 개요
2023년 업무보고 행사 대행 용역	'23.1.13. ~ 2.12.	22 (부가세 포함 금액)	◦ 일시 : 2023년 1월 26일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청와대 영빈관 ◦ 주요 내용 - 부처별(법무부, 공정위, 법제처) 핵심과제 정책방향 발표 및 학계·전문가 토론 * 공정위의 경우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주제로 발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4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23년 대통령 업무보고와 공정경제전략회의는 명칭만 상이할 뿐, 행사의 목적·성격, 논의 주제, 참석자 등이 동일·유사하여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최 명목의 예산 중 일부를 대통령 업무보고에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44) 용역계약서 상 계약기간임.

□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행사 개최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계약 절차 과정에서 예산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남.

○ 「국고금 관리법」 제19조⁴⁵⁾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출원인행위는 정부가 지출할 원인이 생겨 그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로서,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이나 재화의 주문 등의 행위를 의미함.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용역계약서상 계약기간('23.1.13.~2.12.)과 달리 '계약일과 지출원인행위일'이 '23.2.27.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동 행사용역의 경우 실제 행사를 실시하는 시점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행사종료 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등에 따른 행사용역 계약 기간〉

구분	계약기간(또는 계약일)	비고
2023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II-3	2023.2.~3.	
2023년 수의계약현황	2023.2.27.	공정위 정보공개 자료
지출원인 행위 ⁴⁶⁾	2023.2.2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45) 「국고금 관리법」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46)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행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데,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3.2.12.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2주 이상이 지난 2월 27일에 시스템(D-Brain) 상 지출원인행위를

□ 용역의 과업 내용 및 그에 대한 반대 급부의 지급을 상호간에 확정하는 계약의 선행이 예산집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점을 고려하면, 사후계약 체결은 법령상 허용되기 어려운 부적정한 집행방식임.⁴⁷⁾

○ 특히, 사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어 용역대금 2,200만원(부가세 포함)의 적정성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예산 낭비요소가 존재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보고 등 행사 진행시 행사가 진행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하였음.

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9. 공정거래지원⁴⁸⁾: 지출원인행위 관련 행정절차 지연 주의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공정거래지원’은 공정거래정책 홍보, 조직문화 활성화·직원역량 제고, 모의공정위경연대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8억 1,900만원 중 8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공정거래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정거래지원	819	819	-	0	819	811	-	8	77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3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체결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사실을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함으로써 국고금관리법령 상의 행정절차를 위반하였음.

48) 세부사업: 공정거래지원(7031-300)

□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부사업 ‘공정거래지원’에 포함된 내역사업 ‘공정거래정책알리기’를 통해 온·오프라인상의 각종 기관·정책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음.

○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지 못한 자」라는 제목의 웹드라마와 장편영화를 자체 제작하여 신고·조사·심의·제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당해 드라마·영화에 직원들이 연출, 제작, 편집, 단역출연, 감수 등에 참여함으로써 조직소속감 및 사명감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부 내에서도 국정홍보점검회의에서 우수사례로 공유되기도 하였음.



세상에 없던 불공정 거래 추적극

공정하지 못한 자

공정거래위원회 웹드라마 | 6월 30일 목요일 첫 공개 | 유튜브 채널 공다방

강지훈 김리한 김시윤 노경 박재환 신동호 이선 장유진 최세나 최지현 오연서 김미연

인병훈 구지영 신동민 정창식 김하리 임근태 이영민 이영희 김 석 강윤준 김민혁 양병준
김지수 박준형 이만우 윤지혜 김지훈 김광희 이송재 이지은 김민지 박건희
작가 최유진 감독... OST 안세은 김성훈 협조 장주홍곽우정 음악 STOMP MUSIC

아시아경제 2024년 01월 29일 월요일 025면 PEOPLE

공정위가 스릴러 영화 만든 까닭

사건 처리 과정 등 홍보 자체제작 웹드라마 영화화 직원들, 제작과정 직접 참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제작한 장편 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를 29일 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영화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유튜브 채널에 연재했던 자체제작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를 토대로 영화화한 것이다. 정부 부처가 장편영화를 자체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 직원들도 단역출연과 연출 등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영화는 단합을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자와 이를 포해치고 단죄하려는 공정위 직원 간의 쫓고 쫓기는 스릴러물이다. 조사 현장의 긴박한 상황과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직원 간 갈등 등 일반 상업영화와 같은 극적 요소를 담고 있다.

사건처리과정을 현실감 있게 보기 위해 사건 담당자 인터뷰와 사건 부서의 감수를 거쳐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실제 사무실과심의

장 등 업무 공간을 촬영 장소로 활용했다.

영화는 LG유플러스TV, SK브로드밴드, KT 지니TV 등 IPTV 3개사와 네이버 시리즈온, 왓치, 웨이브, 티빙 등 OTT 4개사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배급은 KT알파가 맡았다.

공정위는 "이번 영화는 공정위 사건의 처리 과정과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홍보를 재미있는 소재와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 다만, 당해 사업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의 측면에서 절차상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웹드라마 및 영화 원고 작성 및 제작 등을 위해 총 2건(2,847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중 ‘IPTV 및 OTT 탑재용 위원회 홍보 콘텐츠 원고 작성 및 후반작업’ 계약은 2024년 1월 29일에 개봉한 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의 제작과 관련한 계약임.

〈공정거래위원회 홍보 드라마·영화 관련 계약 체결 내역〉

계약명	계약금액
2023년 위원회 홍보 웹드라마 원고 작성 및 제작 진행	1,340만원
IPTV 및 OTT 탑재용 위원회 홍보 콘텐츠 원고 작성 및 후반작업	1,507만원

- 「국고금 관리법」 제19조⁴⁹⁾는 지출원인행위를 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하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⁵⁰⁾는 지출원인행위를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체결은 곧 지출원인행위의 실시에

49) 「국고금 관리법」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50)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출원인행위”란 「국고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채무관(이하 “채무관”이라 한다)이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함.

-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1조⁵¹⁾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실시에 관한 권한을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인 “재무관”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⁵²⁾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실시할 때에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함.
- 위 규정을 토대로 사안을 검토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계약을 9월 4일 체결하였으나 지출원인행위부에는 이를 2023년 11월 29일⁵³⁾에 기재하였음. 이는 지출원인행위 실시와 동시에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위반에 해당함.
- 이와 유사하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업무용 수첩 제작과 관련한 지출⁵⁴⁾(집행액 2,541만원)에 대한 계약을 2023년 12월 22일에

51)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지출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52) 제39조(지출원인행위서의 작성 등)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53) 실제 자금이체일은 2023년 12월 29일

체결하고 12월 28일을 기한으로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12월 29일에 이르러서 지출원인행위부 기재 및 대금 지급을 실시하였음.

- 지출원인행위부 기재는 단순히 지출원인행위의 발생 사실을 장부에 기록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액을 확정하고 그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짐. 지출원인행위의 기재가 지연되는 경우 정해진 세출예산에 비해 지출원인행위가 과도하게 실시되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⁵⁵⁾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출원인행위부 기재를 곧바로 실시하여 국고금관리법령 등에 따른 지출절차를 준수하고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액이 적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4) 기관운영 비총액인건비성기본경비(7011-250)

55)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0. 행정소송수행⁵⁶⁾: 과징금 환급업무 조기 완료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행정소송수행’은 위원회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 경제·법률 분석 등의 대응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32억 7,9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음.

〈2023년도 행정소송수행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행정소송수행	3,279	3,279	-	-	3,279	3,279	-	-	3,28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23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2) 검토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8 근무일 이내에 과징금 환급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나 2023년 과징금 환급업무가 시작된 18건 중 12건(66%)은 판결문 등이 접수된 날부터 8근무일을 초과하여 환급업무를 완료하였음.

56) 세부사업: 행정소송수행(7031-301)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때 과징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결로서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⁵⁷⁾

○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과징금과 환급가산금⁵⁸⁾을 지급하게 되며, 환급가산금의 비율은 ‘연 1천분의 35’임. 과징금 및 환급가산금은 국고금관리법령⁵⁹⁾에 의거하여 반환 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 수입금에서 지급됨.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소송상대방(기업 등)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동시에 연 3.5%의 비율로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

57) 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의 일부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도 과징금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함.

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59)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수입금의 환급)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금의 환급결정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따른다.

급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국가재정의 불필요한 수입감소(지출)가 발생하게 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예규)을 통해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始期) 및 환급 업무 처리 기간을 마련하여 과징금 환급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당해 예규는 판결문이 접수된 날 등을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로 정하고, 판결문이 접수된 날부터 2 근무일 이내에 송무담당관이 이를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며,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4 근무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업무지원팀장에게 환급 조치 요청을 완료하고, 업무지원팀장은 환급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2 근무일 이내에 환급조치를 완료하도록 정함. 요약하자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판결문이 접수된 날부터 최대 8 근무일 이내에 과징금 환급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⁶⁰⁾

60)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5. 환급 업무의 처리

과징금 환급과 관련된 부서는 과징금 환급업무의 시기가 도래하면 담당업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환급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부서별 업무내용 및 처리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 송무담당관

송무담당관은 소송패소의 판결문이 접수되거나 고등법원 패소 후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결문이 접수된 날 또는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날로부터 2 근무일 이내에 이를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심판담당관

심판담당관은 직권취소 또는 추가감면의 의결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재결서가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일 또는 재결일로부터 2 근무일 이내에 이를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과 업무지원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환급 업무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과징금 환급업무가 시작된 18건의 과징금 환급조치 완료까지 평균 13.8일을 소요하였고, 그 중 12건(66%)은 판결문 등이 접수된 날부터 8근무일을 초과하여 환급 업무를 완료하였음.

□ 한편, 과징금부과처분이 일부취소된 9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재산정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원금만을 환급하고 환급가산금은 2023년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환급가산금은 과징금 납부일부터 과징금 환급일까지 산정되며,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판결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사업자에 환급하기 때문에 과징금 재산정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증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가산금을 조속히 환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재산정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

다.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은 송무담당관으로부터 소송패소의 판결문 송달사실이나 상고제기 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심판담당관으로부터 직권취소 또는 추가감면의 의결서나 이의신청 인용 재결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통보받은 날부터 4 근무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업무지원팀장에게 환급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은 원사건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환급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받은 날부터 2 근무일 이내에 환급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2023년도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 현황〉

* 2023. 12. 31. 기준

사건명	과징금 환급사유	처리기간	환급가산금 지급액
올라이트라이프(주)	소송패소	14근무일	미확정 ^{주1}
(주)한진		11근무일	미확정
(주)삼일		11근무일	미확정
디엘이앤씨		15근무일	미확정
가스트랑스포르 애떼끄니가즈		27근무일	미확정
한국제강(주)		4근무일	9억 22만원 ^{주2}
(주)엘엑스하우시스		8근무일	미확정
한온시스템(주)		13근무일	미확정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		35근무일	794만원
(주)현대엘앤씨		7근무일	미확정
삼성에스디아이(주)		5근무일	미확정
하이트진로	과징금 재산정에 따른 가산금 지급	13근무일	5,925만원
두산인프라코어		13근무일	372만원
유경제어		5근무일	339만원
디엘이앤씨		11근무일	120만원
***	추가감면 의결*	17근무일	_주3
***		8근무일	-
***		31근무일	-

*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여 익명처리

주 1) 미확정 :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일부패소한 경우라도 판결의 형태는 과징금부과처분의 전부를 취소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낸 과징금 원금을 전액 환급하여야 하며, 이후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당초의 과징금과 재산정한 과징금 차액에 관하여 과징금 납부일로부터 과징금 원금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함.

주 1) 환급업무 처리기간이 짧은 경우(한국제강)라 하더라도 당초 부과한 과징금의 액수가 크거나 (한국제강 : 313억원)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소송 절차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액이 증가함.

주 2) 추가감면 의결에 따른 과징금 환급은 자진신고로 인한 과징금 감경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환급가산금 지급액 등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환급가산금 지급액	총 20건 11억 4,045만원	총 19건 91억 830만원*	총 6건 9억 7,572만원
평균 처리기간	43.4일	13.1일	13.8일

* 2015년 사료가격 담합을 이유로 사료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2022년에 직권취소하여 발생한 환급가산금(5개사, 총 66억 629만원) 포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한 기업등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산금 지급에 따른 국세수입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환급업무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1. 한국소비자원 출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소비자원 출연’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⁶¹⁾’으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정책의 연구, 소비자교육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출연하는 사업임.

□ 2023년도 한국소비자원의 수입액(수입실적)은 출연금 508억 5,300만원 등 534억원 9,900만원이고, 지출액(집행액)은 인건비 372억 3,600만원, 사업비 103억 8,400만원, 운영비 52억 7,200만원 등 총 528억 9,200만원(집행률 95.3%)임.

〈2023년도 한국소비자원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실적 (B)	차액 (B-A)	비율 (B/A)
1. 정부출연금	50,853	50,853	50,853	-	100.0
2. 자체수입	3,378	3,378	2,267	△1,111	67.1
- 전년도이월금	952	952	506	△446	53.2
- 수탁용역수입	1,660	1,660	1,365	△295	82.2
- 교육연수수입	40	40	4	△36	10
- 이자수입	125	125	248	123	198.4
- 임대·기타수입	601	601	144	△457	24.0
3. 임차보증금 반환금	1,558	1,558	379	△1,179	24.3
수 입 합 계	55,789	55,789	53,499	△2,290	95.9

(자료: 한국소비자원)

61) 직원정원이 300명, 총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미만인 공공기관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2023년도 한국소비자원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1. 인건비	36,661	37,561	37,236	325	99.1
2. 사업비	11,462	11,462	10,384	1,078	90.6
(항)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1,299	1,299	1,129	170	86.9
(세항) 정책연구	540	540	496	44	91.9
(세항) 거래조사	500	500	472	28	94.4
(세항) 대외협력	259	259	161	98	62.2
(항)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2,720	2,720	2,480	240	91.2
(세항) 소비자 정보제공	383	393	379	14	96.4
(세항) 소비자 역량강화	135	125	112	13	89.6
(세항) 소비자원 정보화	2,083	2,083	1,884	199	90.4
(세항) 소비자홍보	119	119	105	14	88.2
(항)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4,384	4,384	3,978	406	90.7
(세항) 소비자안전	1,344	1,344	1,211	133	90.1
(세항) 시험검사	3,040	3,040	2,767	273	91.0
(항)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1,565	1,565	1,455	110	93.0
(세항) 피해구제	804	804	761	43	94.7
(세항) 분쟁조정위원회	417	417	401	16	96.2
(세항) 지방소비자	344	344	293	51	85.2
(항) 수탁용역	1,494	1,494	1,342	152	89.8
(세항) 수탁용역	1,494	1,494	1,342	152	89.8
3. 운영비	6,304	6,304	5,272	1,032	83.6
(세항) 경영기획	5,750	5,750	4,748	1,002	82.6
(세항) 부서운영비	554	554	524	30	94.6
4. 예비비	1,362	462	-	462	0.0
지출합계	55,789	55,789	52,892	2,897	94.8

(자료: 한국소비자원)

2) 출연금을 통한 수탁용역 사업 추진 부적정

한국소비자원은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편성된 출연금 일부를 수탁용역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 사업에 집행하였음.

- 한국소비자원은 고유사업으로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 등의 수탁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사업은 「소비자기본법」 제35조⁶²⁾에 규정된 업무 중 정책연구, 거래조사, 대외협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정책연구에 5억 4천만원, 거래조사에 5억, 대외협력에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음.

62) 제35조(업무)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9.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②~⑤ 생략

〈2023년도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액
	본예산	수정예산(A)			
▪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1,299	1,299	1,129	86.9%	1,299
- 정책연구	540	540	496	91.9%	500
- 거래조사	500	500	472	94.4%	540
- 대외협력	259	259	161	62.2%	259

(자료: 한국소비자원)

□ 수탁용역으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⁶³⁾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2007년부터 실시된 제도로써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 인증기업에게는 우수기업 포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의 경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매년 인증기업 수는 증가하는 추세임.('19년 182개→ '23년 225개)

63)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2007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현황〉

(단위: 개사)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증기업 수*	182	185	211	219	225
신규인증 기업 수	28	22	39	27	19
재인증 기업 수	63	72	78	78	101

(자료: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는 매년 상반기(3월~6월)와 하반기(7월~12월) 두 번으로 나누어 인증 신청→한국소비자원 사전 검토→현장심사→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인증서 교부 등의 절차를 거치며, 신청기업은 인증신청에 필요한 심사비용을 납부(대기업 600만원, 중소기업 20만원)함.

〈CCM 인증 심사 절차〉

심사 접수 (3월/6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신청
심사 일정 협의 (3월/7월)	심사 신청기업, 심사위원간의 일정 조율
사전 검토 및 서면 질의 (4월/7~9월)	기업 심사자료 및 홈페이지, 관련 기사 등을 사전 검토
현장심사 (4월/7~9월)	- 심사팀 : 신규평가 2~3명, 재평가 2명 - 현장심사 : 4h('21년 사전질의 도입으로 시간 축소)
인증심의위원회 (5월/10월)	- 심사 신청기업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심의 - 심의결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인증통보 및 인증서 교부 (5~6월/11~12월)(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과 통보 -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인증서 교부

*(상반기 일정/하반기 일정)

(자료: 한국소비자원)

〈CCM 인증 심사항목 및 심사비용〉

구분		신규인증	재인증
평가항목	대기업	45개	47개
	중소기업	36개	43개
	공공기관	44개	46개
심사비용	대기업·공공기관	6백만원	4백만원
	중소기업	20만원	15만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용역비 및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의 심사비용을 수입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수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증준비기업 교육 위탁용역비·중소기업평가 위탁용역비 4,600만원과 사업자의 심사비용 4억 2,800만원을 포함한 4억 7,400만원이고 전액 집행하였음.
- 위탁용역비는 소비자중심경영과 관련한 교육 및 중소기업평가 위탁 운영에 집행되었으며, 사업자가 납부한 심사비용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수여식 운영 등 인증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 수행을 위해 집행되었음.
-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은 고유사업비로서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등에 투입되어야 할 대외협력비를 공정거래위원회 수탁사업인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제도 활동 지원’ 사업에 집행해오고 있음.

〈2023년도 대외협력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산출액
대외협력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122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활동 지원	39
	합계	161

(자료: 한국소비자원)

- 고유사업비로 지출한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활동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동반성장협의를체를 운영해 CCM인증기업인 대기업과 CCM미인증기업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간 멘토링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금인 대외협력 사업비를 집행한 것에 대해 동반성장협의를체 운영을 통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사전진단 업무는 동 사업의 수탁용역인 인증준비교육, 중소기업평가 및 인증심사과정에 속하지 않는 기관의 고유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사전진단은 인증심사 절차 개시 전에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증기준 적합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심사의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출연금 산정 시 계획했던 한국소비자원

고유사업의 수행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임.

- 그러므로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위한 추가사업은 수탁용역비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고유사업과 수탁사업간 설정을 명확히 하고, 출연금 사업비와 수탁운영비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집단분쟁조정 활성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실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2건에 불과하므로 집단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사업’은 소비자가 소비생활에서 겪는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합의·조정하여 신속한 피해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15억 6,500만원 대비 93.0%인 14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액
	본예산	수정예산(A)			
▪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1,565	1,565	1,455	93.0	1,706
- 피해구제 ⁶⁴⁾	804	804	761	94.7	812
- 분쟁조정 ⁶⁵⁾	417	417	401	96.2	550
- 지방소비자 ⁶⁶⁾	344	344	293	85.2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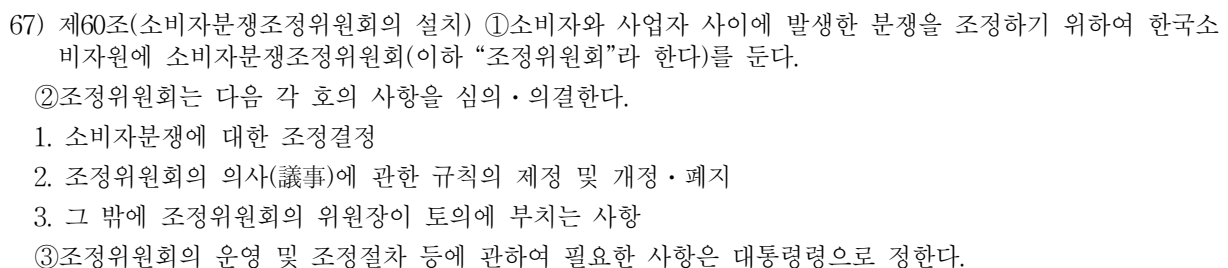
(자료: 한국소비자원)

64)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65) 피해구제 단계에서의 합의 미성립 사건, 지자체·소비자단체의 요청 사건을 심의·조정하는 준사법적 효력의 대안적인 분쟁 해결책 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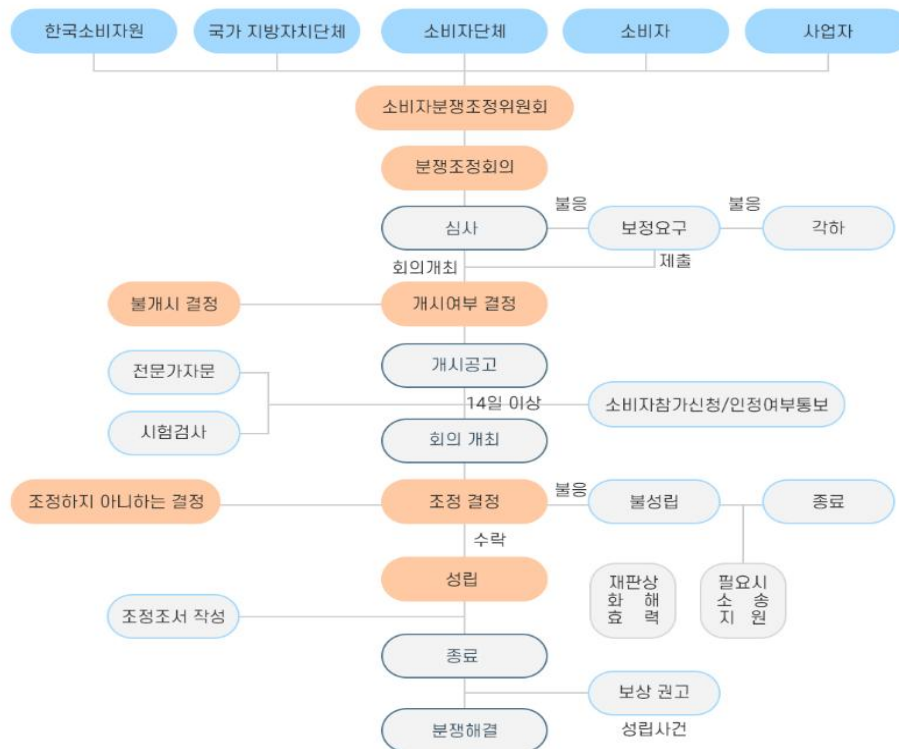
66)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권역별 특성에 따른 특화 품목 발굴 및 집중 처리 등 지역 밀착형 피해구제 활성화 업무 수행

○ 피해구제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소비자나 사업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의 분쟁조정 의뢰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함.



□ 분쟁조정 중 집단분쟁조정은 유사·동일한 소비자피해를 일괄구제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써 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⁶⁸⁾ 및 동법시행령 제56조⁶⁹⁾에 따라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결정할 수 있음.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68)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69)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그러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2020년 12건, 2021년 11건이던 접수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2022년 1건, 2023년 2건에 불과하므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집단분쟁조정 접수 실적〉

(단위: 건,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접수 건수	12	11	1	2
소비자 수	1,061	12,991	682	102

(자료: 한국소비자원)

〈최근 4년간 집단분쟁조정 접수내역〉

구분	사건명
2020년	2020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옵션 미포함으로 인한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요구
	호텔 수분양자 혜택사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자기관리 멤버십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
	타운하우스 발코니 확장 계약 중도금 반환 요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과 다른 무상 옵션 설치 요구
	광고 내용과 다른 아파트 방충망 설치 계약 해제 요구
	아파트 현관 중문 하자에 따른 계약 해제 요구
	항공운송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아파트 주방 가스렌지 후드 하자 보수 요구
	계약 내용과 다른 에어컨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항공권 구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농산물 포장상자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21년	물빠짐 아기욕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아파트 주방타일 미시공에 따른 타일시공 요구
	젓병세정제 금속 이물 검출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아파트 레인지후드 소음 과다 발생 등에 따른 교체 요구
	물빠짐 아기욕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아파트 난방배관 오염수 및 불량에 따른 이물질 제거 요구
	머지플러스 잔여포인트대금 환급 요구(위메프 등)
	머지플러스 잔여포인트대금 환급 요구(이베이코리아 등)
	머지플러스 잔여포인트대금 환급 요구(티몬 등)
	머지플러스 잔여포인트대금 환급 요구(11번가 등)
2022년	임대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환급 요구
	아파트 외벽 장식물 낙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2023년	GX프로그램 및 필라테스 폐지로 인한 강습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 요구

(자료: 한국소비자원)

□ 집단분쟁조정은 대량 생산·소비 체제 심화로 인한 물품·서비스 거래과정에서 대규모 집단사건 조정을 통해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 집단분쟁절차가 개시될 경우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신청을 통해 분쟁조정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으며,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사업자로 하여금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⁷⁰⁾.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의 직접 의뢰권자로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집단분쟁조정 건수가 2건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집단 소비자피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등 집단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70)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③ 생략

④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⑤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⑧ 생략

1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공정거래 및 경쟁정책 연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의 조정, 가맹·대리점종합 지원, 공정위 수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출연하는 사업임.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3년도 수입액(수입실적)은 공정위 출연금 116억 5,700만원 등 126억 3,100만원이고, 지출액(집행액)은 인건비 70억 3,200만원, 사업비 21억 4,600만원, 운영비 25억 3,100만원 등 총 124억 7,900만원(집행률 97.2%)임.

〈2023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수입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실적 (B)	차액 (B-A)	비율 (B/A)
1. 정부출연금	11,657	11,657	11,657	-	100.0
2. 기타수입	316	316	189	△127	59.8
3. 수탁사업비	863	863	785	△78	91.0
수 입 합 계	12,836	12,836	12,631	△205	98.4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1. 인건비	7,171	7,171	7,032	139	98.1
2. 운영비	2,571	2,571	2,531	40	98.4
3. 사업비	2,231	2,231	2,146	85	96.2
- 분쟁조정	532	532	505	27	94.9
- 공정거래연구	483	483	459	24	95.0
- 공정거래전문교육	131	131	128	3	97.7
- 협약이행평가	323	323	315	8	97.5
- 가맹종합지원	253	253	238	15	94.1
- 동의의결이행관리	17	17	17	-	100.0
- 대리점종합지원사업	325	325	317	8	97.5
- 전자결재시스템교체	167	167	167	-	100.0
4. 수탁사업비	863	863	770	93	89.2
- 가맹본부정보공개등록	304	304	294	10	96.7
- CP등급평가 ⁷¹⁾	186	186	186	-	100.0
- 중소기업기술자료비밀 보호컨설팅	53	53	39	14	73.6
- 경쟁영향평가연구	320	320	251	69	78.4
지출합계	12,836	12,836	12,479	357	97.2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7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성립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3년도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성립률은 80%를 하회하며, 분쟁조정안을 제시한 비율도 3.3%에 불과하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사업은 6개 분야에서 발생한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⁷²⁾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액 5억 3,200만원 대비 94.9%인 5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분쟁조정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 (B)	차액 (A-B)	집행률 (B/A)
분쟁조정사업	532	532	505	27	94.9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⁷³⁾등 6개 법률⁷⁴⁾의 분쟁조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불공정약관, 대리점거래의 6개 분야에서 발생한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72)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소송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73)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⑩ 생략

7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6개 법률 현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개분야 분쟁조정협의회 현황〉

구분	근거법률	조정대상	분쟁유형
공정거래 분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72조 제1항 위반 관련 사업자 분쟁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
가맹사업 거래 분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분쟁 예) 프랜차이즈 본부와 점주	허위과장정보제공, 정보공개서미제공, 가맹금반환청구, 계약이행청구, 부당한 계약해지/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하도급 분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분쟁 예)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 업거래 분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분쟁 예)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납품업자 또는 입점업체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수령거부/지체, 부당한 반품, 판촉비 부담전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등
약관분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및 이와 비슷한 유형의 불공정 약관 관련 분쟁 예) 대리점 및 프랜차이즈약관 등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약관,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권 제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위험을 전가시키는 약관 등
대리점 분쟁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 예)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등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그런데 2023년도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종결사건을 포함한 전체 처리건 대비 조정성립률은 40.5%이며, 종결사건을 제외한 처리건 대비 성립률은 79%로서 성립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⁷⁵⁾.

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조정 등)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또한 조사과정을 거쳐 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협의회의 조정안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임.

〈최근 3년간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

구 분	처리현황 및 유형						성립률 [A/(A+B)]	전체 처리건 대비 성립률 [A/(A+B+C)]
	계 [A+B+C]	증가율	성립 ⁷⁶⁾ [A]	불성립 ⁷⁷⁾ [B]	종결 ⁷⁸⁾ [C]			
2021년	소계	2,936	△1	1,156	392	1,388	75	39
	공정	1,054	13	337	129	588	72	32
	가맹	483	△3	165	62	256	73	34
	하도급	863	△10	386	128	349	75	45
	유통	25	△32	9	3	13	75	36
	약관	427	△11	225	60	142	79	53
	대리점	84	20	34	10	40	77	40
2022년	소계	2,868	△2	1,202	339	1,327	78	42
	공정	1,119	6	423	148	548	74	38
	가맹	513	6	230	54	229	81	45
	하도급	853	△1	361	95	397	79	42
	유통	34	36	21	1	12	95	62
	약관	271	△37	141	27	103	84	52
	대리점	78	△7	26	14	38	65	33
2023년	소계	3,151	10	1,278	350	1,523	79	41
	공정	1,267	13	475	135	657	78	37
	가맹	575	12	263	62	250	81	46
	하도급	929	9	354	100	475	78	38
	유통	26	△24	13	1	12	93	50
	약관	278	3	137	48	93	74	49
	대리점	76	△3	36	4	36	90	47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76) 당사자가 협의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하거나, 스스로 합의하여 조정절차 종료를 원하는 경우

77) 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78) 각하, 신청취하,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조정절차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성립 및 불성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편 최근 5년간 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처리된 사건 중에 협의회가 조정안을 제시한 비율은 3.3%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보임.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조정안 관련 현황〉

(단위: 건)

년도	처리건	조정안 수락 및 불수락 현황				
		합 계 (처리건 대비 조정안 제시 비율)	양당사자 수락	신청인 수락	피신청인 수락	양당사자 불수락
2019년	3,014	149 (4.9%)	76	52	13	8
2020년	2,972	139 (4.7%)	72	40	7	20
2021년	2,936	141 (4.8%)	70	51	12	8
2022년	2,868	149 (5.2%)	75	53	10	11
2023년	3,151	104 (3.3%)	53	34	10	7

※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스스로 합의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조정절차를 거부하여 불성립되는 경우 등은 조정안 제시 없이 처리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안 제시에 앞서 사전 단계인 분쟁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등에서 면밀한 조사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안 제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이 불성립하는 주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쟁조정 성립 대책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임.

3) 수탁연구용역 확대 필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최근 5년간 수탁연구용역 실적은 7건에 불과하므로 수탁연구용역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3회계연도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기타수입, 수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수입은 전년 이월금, 법원연계조정, 이자수입 및 잡수입, 수탁연구용역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금액 (B)	차액 (B-A)	비율 (B/A)
1. 정부출연금	11,657	11,657	11,657	-	100.0
2. 기타수입	316	316	189	△127	59.8
3. 수탁사업비	863	863	785	△78	91.0
수 입 합 계	12,836	12,836	12,631	△205	98.4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기타수입 중 수탁연구용역 항목을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2건의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예산 편성액 2,300만원 대비 900만원의 수입실적을 달성하였음.

〈2019년~2023년 수탁연구용역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실적 (B)	차액 (B-A)	비율 (B/A)
2019	107	107	67	△40	62.6
2020	40	40	36	△4	90.0
2021	40	40	23	△17	57.5
2022	54	54	11	△43	20.4
2023	23	23	9	△14	39.1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그러나 최근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수탁연구용역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 수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탁연구용역 수행과제는 연간 1,2건에 불과하므로 수탁연구용역의 추가수행을 통해 예산 수납률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019년~2023년 수탁연구용역 수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위탁기관	수탁과제명	수입결산
2019	한국법제연구원	베트남 공정경쟁 역량강화 사업	67
2020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매뉴얼 개발 연구	18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산업 분야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18
2021	공정위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마련	23
2022	공정위	2022년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 행사 용역 위탁	11
2023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 관련 위반금액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6
		OOO 시장 분석*	3

* 해당 과제는 보안과제로 일정 수준의 비공개가 필요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이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구 인력 결원 등에 따른 연구 공백 최소화를 위해 수탁연구용역을 연간 1건 내지 2건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주제 발굴을 위해 노력중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설립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도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 등의 조사 및 분석,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등 고유업무 수행으로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여 추가 연구용역 주제를 발굴하고 연구용역 수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탁연구용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1) 당초 계획되지 않은 연도 중 사업방식 변경 지양 필요	○ [지적사항]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은 2021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수행하였으나, 2022년에는 연도 중에 외부 위탁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함 - 한국경제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규제학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제법학회 등에 6건의 수의 계약으로 사업을 위탁함 ※ 2022년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 계약 상세내역 (단위: 천원) <table><tr><th>계약상대방</th><th>계약금액</th><th>계약기간</th><th>계약방식</th></tr><tr><td>한국경제법학회</td><td>20,000</td><td>2022.7.7.~8.27.</td><td>수의계약</td></tr><tr><td>한국산업조직학회</td><td>10,000</td><td>2022.10.13.~11.4.</td><td>수의계약</td></tr><tr><td>한국소비자법학회</td><td>15,000</td><td>2022.11.1.~11.30.</td><td>수의계약</td></tr><tr><td>한국규제학회</td><td>15,000</td><td>2022.11.2.~11.11.</td><td>수의계약</td></tr><tr><td>한국공정거래조정원</td><td>12,000</td><td>2022.11.30.~12.2.</td><td>수의계약</td></tr><tr><td>한국경제법학회</td><td>14,300</td><td>2022.11.30.~12.5.</td><td>수의계약</td></tr></table> - 외부위탁(일반용역비 8,200만원 집행)으로 전환하였음에도 기존 편성 예산 중 일반수용비, 임차료, 사업추진비로 1,000만원을 집행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에 반영된 사업방식에 대해 연도 중 변경을 지양하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예산만 엄격히 집행할 것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방식	한국경제법학회	20,000	2022.7.7.~8.27.	수의계약	한국산업조직학회	10,000	2022.10.13.~11.4.	수의계약	한국소비자법학회	15,000	2022.11.1.~11.30.	수의계약	한국규제학회	15,000	2022.11.2.~11.11.	수의계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2,000	2022.11.30.~12.2.	수의계약	한국경제법학회	14,300	2022.11.30.~12.5.	수의계약	시정	○ 2023년부터는 학술 심포지엄 예산이 일반용역비로 전액 편성되어 있어서 세목조정이나 일반용역비 이외의 지출은 발생하지 않게 됨 ○ 조치완료일 : 2023년 1월 1일	조치완료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방식																													
한국경제법학회	20,000	2022.7.7.~8.27.	수의계약																													
한국산업조직학회	10,000	2022.10.13.~11.4.	수의계약																													
한국소비자법학회	15,000	2022.11.1.~11.30.	수의계약																													
한국규제학회	15,000	2022.11.2.~11.11.	수의계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2,000	2022.11.30.~12.2.	수의계약																													
한국경제법학회	14,300	2022.11.30.~12.5.	수의계약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2) 사업 성과평가 방식의 합리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개도국 경쟁당국 전문관 파견’은 개발도상국에 경쟁법 전문가를 약 1개월간 파견하여 경쟁법 정책의 수립·운영을 지원하는 내역 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 500만원을 집행함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 현장 실무연수’는 개발도상국 경쟁당국의 직원을 초청하여 2~4주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내역사업으로, 예산현액 7,400만원 중 6,300만원을 집행함 사업 수행성과를 실무연수에 대한 만족도 및 전문관 자문 내용의 만족도 등 상대국가 참여자의 설문 응답으로만 측정하고 있음 - 특히 2022년 성과평가 내용을 보면, 개도국 경쟁당국 실무연수는 실시 인원 4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고, 전문관 자문 내용 만족도는 2인을 대상으로 3문항을 설문한 결과로서, 성과지표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제한적임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교류 및 ODA사업의 성과를 보다 실효성 있게 검증하고, 발전적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제도개선	○ 현행 만족도 설문을 개도국 기술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품질평가로 개선 - 평가 항목을 다변화하여 연수 전후 학업성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3)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 입찰방식 적용 및 포렌식 전문교육 참여도 제고 필요	○ [지적사항] '2022년 디지털포렌식 장비확충' 계약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일괄구매하였는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2017년에 도입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갱신이 목적으로, 하드웨어(수집·보관용 디스크, 테이터 보관 금고 등)도 기술력을 요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 사업성격 상 기술적 요소보다는 라이선스 갱신 비용 등 가격적 요소 중심의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합리적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로 사업자를 선정함 ○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은 외부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공정위 포렌식 조사관에 대한 업무 관련 교육을 청사 내 포렌식 교육장에서 연(年) 2회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8월과 10월에 각각 실시함(3,000만원 집행) - 2022년 교육 실시 내용에 따르면 교육일자별 참여인원이 2~9명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포렌식 조사관이 15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교육 참여 실적이 저조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 집행 시 사업수행 능력과 예산 절감의 측면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합리적 입찰방식을 선택하는 한편, 포렌식 전문교육의 참여도 제고 방안 및 교육방식과 프로그램 다변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측면을 고려하여 조달청과 협의 후 23년 사업수행 - '23년 디지털증거 관리시스템 구축 및 장비확충 사업은 새로운 시스템 개발 및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포렌식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가 포함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사업수행자의 기술적 평가(90%)와 가격평가(10%)]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 23년 포렌식 전문교육은 (주)지엠디소프트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4월(24시간), 10월(24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함 - 중도 퇴사자 1명을 제외한 포렌식 조사관 현원(13명) 모두 교육(24h)을 이수하였음 - 24년도는 한국포렌식학회,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 세미나 및 교육에 포렌식 조사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변화하는 교육계획(안) 수립 * 사건부서의 포렌식 조사지원 시 전수 대응 기조에 따라 상반기 교육 미참석자를 위하여 동일 교육을 하반기에 추가 진행 ○ 조치완료일 : 2024년 01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4) 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적정성 검토 필요	○ [지적사항] ‘경제분석 운영’ 내역사업의 일반연구비 예산(3억 6,000만원)이 전년도(4,000만원)에 비해 800% 증액됨 - 예산 증액에 따라 경쟁법사건 처리 및 산업분석 연구용역 수행 건수는 2021년 5건에서 2022년에는 18건으로 증가함 ○ 연구용역 18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행자를 선정하였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함 - 이 중 3건은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함에도 보안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상대방이 민간 산학협력단 및 학회 등이라는 점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2022년 경제분석 운영 내역사업 수의계약(보안사유) 내역 (단위: 천원) <table> <tr> <th>계약명</th> <th>계약상대방</th> <th>계약금액</th> </tr> <tr> <td>엘엑스인터내셔널-한국유리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td> <td>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td> <td>40,000</td> </tr> <tr> <td>마이크로소프트-엑티비전블리자드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td> <td>한국산업 조직학회</td> <td>40,000</td> </tr> <tr> <td>생산(구매) 조인트벤처의 경쟁효과 판단을 위한 경제분석</td> <td>한국산업 조직학회</td> <td>30,000</td> </tr> </table>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서 계약법령의 규정 취지를 준수하고,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에 자의성이 없는지 검증할 것	계약명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엘엑스인터내셔널-한국유리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40,000	마이크로소프트-엑티비전블리자드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한국산업 조직학회	40,000	생산(구매) 조인트벤처의 경쟁효과 판단을 위한 경제분석	한국산업 조직학회	30,000	제도개선	○ 특정 사건 관련 용역* 외 경제분석 기법 개발 등 비사건 용역의 경우 경쟁입찰을 적극 실시하겠음 * 특정 사건 관련 용역 : 사업자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행위가 관련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단순 학술연구와 다르고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위원회 사건 대응 전략이 포함되어 있음 ○ 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시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를 거쳐 사건 관련 연구용역의 경우 보안을 위해 수의계약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외부위원에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4월 30일	조치완료
계약명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엘엑스인터내셔널-한국유리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40,000														
마이크로소프트-엑티비전블리자드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한국산업 조직학회	40,000														
생산(구매) 조인트벤처의 경쟁효과 판단을 위한 경제분석	한국산업 조직학회	30,000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5) 유사·중복 연구용역 발주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	○ [지적사항] 이 사업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중 ‘디지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경제분석 기법 연구’는 ‘정책연구개발(1231-310)’ 사업에서 수행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와 주제가 유사함 - 각 연구용역은 계약금액, 계약기간, 주요내용에 있어서 비슷하나, 서로 다른 사업에서 발주, 수행되었으며 집행된 예산과목도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로 상이함 ※ 2022년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관련 연구용역 비교 (단위: 천원) <table><tr><th>연구과제명</th><th>집행사업 (부서)</th><th>예산 과목</th><th>계약기간</th><th>수행기관</th><th>계약금액</th></tr><tr><td>디지털플랫폼분야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경제분석 기법 연구</td><td>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시장구조 개선정책과)</td><td>일반 연구비 (260-01)</td><td>’22년.6~ ’22년.12</td><td>성균관대 산학협력단</td><td>40,000</td></tr><tr><td>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td><td>정책연구개발 (경쟁 정책과)</td><td>정책 연구비 (260-02)</td><td>’22년.5~ ’22년.11</td><td>한국개발 연구원</td><td>45,000</td></tr></table>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중복적인 연구용역 수행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연구과제명	집행사업 (부서)	예산 과목	계약기간	수행기관	계약금액	디지털플랫폼분야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경제분석 기법 연구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시장구조 개선정책과)	일반 연구비 (260-01)	’22년.6~ ’22년.12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40,000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정책연구개발 (경쟁 정책과)	정책 연구비 (260-02)	’22년.5~ ’22년.11	한국개발 연구원	45,000	제도개선	○ 유사·중복 연구용역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향후 정책연구용역의 주제선정 및 추진에 있어 중복 주제에 대해 보다 철저한 내부검토를 진행하여 정책 연구용역비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연구과제명	집행사업 (부서)	예산 과목	계약기간	수행기관	계약금액																	
디지털플랫폼분야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경제분석 기법 연구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시장구조 개선정책과)	일반 연구비 (260-01)	’22년.6~ ’22년.12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40,000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정책연구개발 (경쟁 정책과)	정책 연구비 (260-02)	’22년.5~ ’22년.11	한국개발 연구원	45,000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6) 분쟁조정사업의 적극적 추진 필요	○ [지적사항]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사업의 성과지표인 “분쟁조정을 통한 경제적 성과”의 2022년도 성과달성도는 78.4%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성과계획서상 성과 달성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19</th><th>'20</th><th>'21</th><th>'22</th></tr> </thead> <tbody> <tr> <td>목표(백만원)</td><td>102,293</td><td>117,212</td><td>120,727</td><td>120,727</td></tr> <tr> <td>실적(백만원)</td><td>116,051</td><td>120,727</td><td>103,030</td><td>94,698</td></tr> <tr> <td>달성도(%)</td><td>113.4</td><td>103.0</td><td>85.3</td><td>78.4</td></tr> </tbody> </table> 분쟁조정 실적 저조로 분쟁조정을 통한 조정금액인 직접피해구제액과 조정으로 인한 소송비 절감액 역시 감소함 - 분쟁조정 접수사건 수는 전년대비 약 2% 감소하였는데 이 중 하도급 분야 성립사건은 전년대비 6% 감소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영세 사업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사업 활성화, 대국민 분쟁조정서비스 홍보 등 실적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서비스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구분	'19	'20	'21	'22	목표(백만원)	102,293	117,212	120,727	120,727	실적(백만원)	116,051	120,727	103,030	94,698	달성도(%)	113.4	103.0	85.3	78.4	시정, 제도개선	○ 분쟁조정 인력 전문성 향상 교육 및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활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분쟁조정 성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상임위원 제도를 운영('24년 2월예정)하여 심도 있는 사건 검토와 소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참고로, 2023년 12월 말 기준 전년 대비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3,151건으로 10% 증가하였고, 피해구제금액은 1,309억 원으로 38% 증가하여 분쟁조정 성과가 개선되었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31일	조치완료
구분	'19	'20	'21	'22																				
목표(백만원)	102,293	117,212	120,727	120,727																				
실적(백만원)	116,051	120,727	103,030	94,698																				
달성도(%)	113.4	103.0	85.3	78.4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7) 비서 파견인력의 공공기관 직접고용 전환 필요	○ [지적사항] 2022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비서의 경우 파견형태의 고용을 유지하고, 변경을 계획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파견고용은 공공기관의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에 도움이 되나, 근로자가 직접받는 보수 및 복리후생 등의 차별이 생기며 고용 안정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비서 파견 고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파견근무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 직접고용 전환 검토 필요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비서의 고용 형태를 직접 고용으로 개선할 것	제도개선	○ 기관장 비서의 고용형태를 직접 고용으로 변경하였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8) 가맹사업거래분야 협약평가 실적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 [지적사항] 공정위는 내역사업인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거래행태 개산사 업을 통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장에서 가맹거래의 불공정 거래가 빈번함에도 협약이행 평가 의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이 많아 평가 실적 상 유통, 대리점 분 야는 각각 100%, 90.9%이나, 가맹분야는 64.7%로 현저히 낮음 가맹본부의 허위 정보공개서 등록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 가 큼에도, 허위 정보공개서에 대한 직권조사, 실태조사 등의 성과가 미흡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개발, 협약평가제도에 대 한 이해도 제고 등 가맹분야협약 이행평가실적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허위 등록에 대한 감시를 철저 히 하고, 허위 정보공개서 등록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 구 제 절차를 마련할 것(시정)	시정, 제도개선	○ 가맹분야협약 이행평가실적 개선 방안 관련(제도개선) -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협약제도 홍보 및 이해도 제고(‘23.12.22.) - 협약이행 평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 을 반영하여 가맹분야 협약평가기준 개정 계획(‘24년 하반기) ○ 조치예정일 : 2024년 하반기 ○ 정보공개서 허위 등록 감시 등 관련(시정) - 공정위는 2023년 9월 이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허 위 등록 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였음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th>가맹본부명</th><th>허위정보 유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일</th></tr> </thead> <tbody> <tr> <td>1</td><td>(주)골든하인드 (에그드랍)</td><td>정보공개서에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 관련 사실 미기재 ※ KBS, SBS 등 주요 언론사 보도</td><td>고발, 과징금, 시정명령</td><td>23-12-08</td></tr> <tr> <td>2</td><td>(주)아이스타운 (아이스타운)</td><td>정보공개서에 가맹점에 물품 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지급 받는 경제적 이익 관련 사실 미기재</td><td>시정명령</td><td>23-12-08</td></tr> <tr> <td>3</td><td>(주)캠핑고래 (캠핑고래)</td><td>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금 액 및 비율을 축소하여 기재</td><td>시정명령</td><td>24-01-05</td></tr> <tr> <td>4</td><td>(주)망원동 티라미수 (망원동티라미수)</td><td>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이 아닌 위탁운영매장의 매출액을 기재</td><td>경고</td><td>23-09-15</td></tr> <tr> <td>5</td><td>(주)티앤엠디 (뉴욕쟁이디저트)</td><td>정보공개서에 가맹점 계약해지 관련 내용을 일부 누락하여 기재</td><td>경고</td><td>23-12-28</td></tr> </tbody> </table>	연번	가맹본부명	허위정보 유형	조치결과	조치일	1	(주)골든하인드 (에그드랍)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 관련 사실 미기재 ※ KBS, SBS 등 주요 언론사 보도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23-12-08	2	(주)아이스타운 (아이스타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에 물품 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지급 받는 경제적 이익 관련 사실 미기재	시정명령	23-12-08	3	(주)캠핑고래 (캠핑고래)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금 액 및 비율을 축소하여 기재	시정명령	24-01-05	4	(주)망원동 티라미수 (망원동티라미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이 아닌 위탁운영매장의 매출액을 기재	경고	23-09-15	5	(주)티앤엠디 (뉴욕쟁이디저트)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계약해지 관련 내용을 일부 누락하여 기재	경고	23-12-28	조치중
연번	가맹본부명	허위정보 유형	조치결과	조치일																														
1	(주)골든하인드 (에그드랍)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제적 이익 관련 사실 미기재 ※ KBS, SBS 등 주요 언론사 보도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23-12-08																														
2	(주)아이스타운 (아이스타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에 물품 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지급 받는 경제적 이익 관련 사실 미기재	시정명령	23-12-08																														
3	(주)캠핑고래 (캠핑고래)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금 액 및 비율을 축소하여 기재	시정명령	24-01-05																														
4	(주)망원동 티라미수 (망원동티라미수)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이 아닌 위탁운영매장의 매출액을 기재	경고	23-09-15																														
5	(주)티앤엠디 (뉴욕쟁이디저트)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계약해지 관련 내용을 일부 누락하여 기재	경고	23-12-28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 가맹점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23.12.1.) - 서울시와 업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관련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음('23.12.6.) - 허위 정보공개서 등록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구제 절차 마련을 위해 가맹거래정책과와 지속 협의 중 - 향후에도, 이해관계인의 신고·제보·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직권조사·실태조사에 활용하여 가맹점주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1월 31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9) 소비자중심경영(CM) 제도 운영 수입의 세입 계상 검토 필요	○ [지적사항] 공정위는 ‘소비자중심경영 활동 지원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일반용역비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비목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편성·집행임 * 일반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등 일반업무를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을 한국소비자원의 인증제도 운영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함 -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및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입 직접 사용금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동 사업의 업무 수행 근거 및 관련 지침 등을 고려하여 비목 변경 등 집행방안을 마련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증제도 운영으로 인한 수입을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으로의 계상 필요성 등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재정 운용 체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	제도개선	○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예산 비목을 일반용역비(210-14)에서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로 비목 변경완료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28일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비용 수입을 한국소비자원이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검토 중 ○ 조치예정일 : 2024년 12월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10) 다양한 단체의 참여 보장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동일 소비자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이 과도함 - 최근 10년간 5회 이상 선정 사업자 16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맹은 10년 연속 선정됨 - 예산의 45%가 특정 단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편중되어 있고, 소비자단체별 성과평가 및 환류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022년 보조금 지급 단체 중 ‘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경우, 지부임에도 본부(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같이 보조금 단체로 선정된 것은 부적절함 - 한 단체에 중복 지급 논란 또는 공정위에 미등록된 단체 선정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 소비자단체에 대한 중복지원과 예산편중 제한, 소비자단체별 성과평가 체계마련 등을 통해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시 자격요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주의)	주의, 제도개선	○ 지적된 소비환경개선 국고보조금 사업은 '24년도부터 예산과목이 일반용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개선안을 마련함 - 민간경상보조(320-01)에서 일반용역(210-14)으로 예산과목 변경* * 예산규모가 '23년 539백에서 '24년 243백으로 축소됨 - '24년도부터 사업자 선정을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여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함* * '24년도 소비환경개선 사업 추진계획 수립('23.12.11.)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1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11) 행사대행 용역계약 절차상 법령 위반 시정 필요	○ [지적사항] 한국소비자원은 계약금액 77,391,600원의 'CCM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 행사 대행 용역 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여성기업과 체결하는 1억원 이하의 계약)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형태로 2022년 11월에 체결함 - 한국소비자원은 업체에 직접 견적서를 받는 방식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법령의 절차를 위반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5천만원 초과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소비자원 내규인 「계약사무처리요령」은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여성기업과의 계약을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법령 규정과 배치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추진 시 계약 관련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할 것	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배치되는 「계약사무처리요령」을 개정하였음 - 향후 계약 추진 시 법령과 내규에 따라 과업내용, 사업수행자 등의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9월 27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12)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국외여비 집행 재발 방지 필요	○ [지적사항] 이 사업은 기획조정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임에도, 국외업무여비 집행액 상세내역에는 기획조정관실 소속이 아닌 부서에서 실시한 해외출장이 3건 포함됨 ※ 2022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출장목적</th><th>출장지</th><th>출장기간</th><th>집행액</th><th>출장부서</th></tr> </thead> <tbody> <tr> <td>2022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해외연수</td><td>싱가포르</td><td>'22년.8.29. ~9.3.</td><td>3,811</td><td>혁신행정법 무 담당관실</td></tr> <tr> <td>플랫폼 기업결합 관련 실무협의</td><td>미국</td><td>'22년.11.14. ~11.18.</td><td>4,903</td><td>심판총괄담 당관실</td></tr> <tr> <td>ICN카르텔 워크숍</td><td>뉴질랜드</td><td>'22년.12.4. ~12.9.</td><td>3,576</td><td>정보화 담당관실</td></tr> <tr> <td>선진 상생협력 사례연구</td><td>독일, 프랑스</td><td>'22년.12.7.~ 12.14.</td><td>4,819</td><td>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td></tr> <tr> <td>한-EU, 한-프 경쟁당국 실무협의</td><td>벨기에, 프랑스</td><td>'22년.12.14 ~12.21</td><td>4,201</td><td>서비스업감 시과</td></tr> </tbody> </table> 특히 11, 12월 출장 건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 예산을 통한 국외출장에 함께 참여한 건으로, 동일한 출장에 대해 사업비와 기본경비를 혼용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목적에 맞게 계상하는 한편, 사업별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집행액	출장부서	2022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싱가포르	'22년.8.29. ~9.3.	3,811	혁신행정법 무 담당관실	플랫폼 기업결합 관련 실무협의	미국	'22년.11.14. ~11.18.	4,903	심판총괄담 당관실	ICN카르텔 워크숍	뉴질랜드	'22년.12.4. ~12.9.	3,576	정보화 담당관실	선진 상생협력 사례연구	독일, 프랑스	'22년.12.7.~ 12.14.	4,819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	한-EU, 한-프 경쟁당국 실무협의	벨기에, 프랑스	'22년.12.14 ~12.21	4,201	서비스업감 시과	시정	○ 예산 집행시 사업비와 기본경비를 혼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는 등 주의를 기울이겠음 ○ 조치예정일 : 2024년 12월	조치중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집행액	출장부서																														
2022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싱가포르	'22년.8.29. ~9.3.	3,811	혁신행정법 무 담당관실																														
플랫폼 기업결합 관련 실무협의	미국	'22년.11.14. ~11.18.	4,903	심판총괄담 당관실																														
ICN카르텔 워크숍	뉴질랜드	'22년.12.4. ~12.9.	3,576	정보화 담당관실																														
선진 상생협력 사례연구	독일, 프랑스	'22년.12.7.~ 12.14.	4,819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																														
한-EU, 한-프 경쟁당국 실무협의	벨기에, 프랑스	'22년.12.14 ~12.21	4,201	서비스업감 시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13) 다크패턴에 의한 소비자피해 예방 필요	○ [지적사항] 최근 최초 제시가격과 최종 결제가격이 다른 소비자눈속임(다크패턴) 발생함 * 5개 업체 중 4개 업체 예약 첫 페이지에 세금·수수료제외 금액만 표기, 추가요금 또는 최종 결제금액을 작은 글씨로 적는 방식 등 - 일부 숙박업소의 경우 거래조건에 예약 취소 시 환불 불가 명시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및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에 의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정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하여 사업자에게 판매가격 다크패턴 개선, 분쟁처리 권한 보유 국내지점 설립 등을 권고할 것	제도개선	○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1.25.)했으며, 향후 시장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지속 감시하겠음 - 입법 공백이 있었던 6개 유형*의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 *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잘못된계충구조, 특정옵션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 한국소비자원은 '23년 다크패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24년에도 다크패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임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25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14) 연구용역비 집행방식 개선 필요	○ [지적사항]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특례적 계약지침*을 확대 적용하여 그 취지에서 벗어나 공고기간을 단기로 설정하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공고기간 규정을 위반한 계약체결 사례**도 있음 *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경쟁입찰은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 특히, 사익편취행태 개선 세부사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선 방안 연구’는 예외적 긴급 공고기간인 10일도 충족하지 못함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한시적·특례적 수의계약 요건*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수의계약 체결 건이 8건 있음 * 재난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이더라도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요건 해당 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지식 기반의 학술적 연구활동, 소비행태 실태조사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특례조항을 확대 적용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지침을 준수하고, 한시적 특례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 공정위는 입찰 시 국가계약법령 상의 공고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사업담당자에게 관련 법령 안내 및 입찰 시 사전 검토하도록 하였음 - 향후 24년 연구용역 입찰 시에도 지속적으로 공고기간 준수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음 ○ 또한, 한시적·특례적 수의계약 요건의 규정 취지에 맞게 향후 1차 공고 유찰시 원칙적으로 재공고를 거치도록 각 사업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15) 과징금, 과태료 임의채납액 관리를 통한 수납실적 제고 필요	○ [지적사항] 과징금 및 과태료 항목의 수납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미수납액 중 임의채납액의 규모와 비중이 2020년 대비 2022년에 모두 증가하였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① 과징금 ('21년) 59.8%, ('22년) 55.7%, ② 과태료 ('21년) 67.5%, ('22년) 52.9% * 임의채납: 체납자의 재력부족, 거소 불명 등에 따른 미징수액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시 2021년 임의채납액이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이고, 이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관련 법률 및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의채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시정요구가 의결되었음에도 2022년에 임의채납액이 확대되었음 ※ 최근 3년간 과징금 및 과태료 미수납 유형별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연도</th><th colspan="8">미수납 유형별 현황</th></tr><tr><th colspan="2">납기 미도래</th><th colspan="2">징수유예</th><th colspan="2">임의채납</th><th colspan="2">계</th></tr><tr><th></th><th></th><th></th><th>(비중)</th><th></th><th>(비중)</th><th></th><th>(비중)</th><th></th><th>(비중)</th></tr><tr><td rowspan="3">과 징 금</td><td>2020</td><td>256,200</td><td>82.4</td><td>18,419</td><td>5.9</td><td>36,318</td><td>11.7</td><td>310,937</td><td>100.0</td></tr><tr><td>2021</td><td>475,644</td><td>90.1</td><td>8,370</td><td>1.6</td><td>43,668</td><td>8.3</td><td>527,682</td><td>100.0</td></tr><tr><td>2022</td><td>431,013</td><td>80.9</td><td>37,263</td><td>7.0</td><td>64,754</td><td>12.1</td><td>533,030</td><td>100.0</td></tr><tr><td rowspan="3">과 태 료</td><td>2020</td><td>1,372</td><td>48.1</td><td>-</td><td>0.0</td><td>1,479</td><td>51.9</td><td>2,851</td><td>100.0</td></tr><tr><td>2021</td><td>231</td><td>13.8</td><td>-</td><td>0.0</td><td>1,445</td><td>86.2</td><td>1,676</td><td>100.0</td></tr><tr><td>2022</td><td>121</td><td>6.9</td><td>-</td><td>0.0</td><td>1,635</td><td>93.1</td><td>1,757</td><td>100.0</td></tr></table>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의채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주의할 것	구분	연도	미수납 유형별 현황								납기 미도래		징수유예		임의채납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과 징 금	2020	256,200	82.4	18,419	5.9	36,318	11.7	310,937	100.0	2021	475,644	90.1	8,370	1.6	43,668	8.3	527,682	100.0	2022	431,013	80.9	37,263	7.0	64,754	12.1	533,030	100.0	과 태 료	2020	1,372	48.1	-	0.0	1,479	51.9	2,851	100.0	2021	231	13.8	-	0.0	1,445	86.2	1,676	100.0	2022	121	6.9	-	0.0	1,635	93.1	1,757	100.0	주의	○ 공정위는 국세청과의 교류를 통해 체납추적 교육을 이수하고, 전자압류시스템*을 활용하여 예금을 추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음 *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금융기관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 또한, 납부기한 경과 즉시 독촉 및 재산조회를 진행하여 체납처분 기간을 단축하였고,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액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 다만, 22년 말 기준 과징금 체납자 119개 중 99개 (83.2%)는 폐업, 해산, 청산 등으로 확인되어 과징금 징수 가능성이 매우 낮고,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의 경우 금리 인상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축소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구분	연도			미수납 유형별 현황																																																																																				
		납기 미도래		징수유예		임의채납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과 징 금	2020	256,200	82.4	18,419	5.9	36,318	11.7	310,937	100.0																																																																															
	2021	475,644	90.1	8,370	1.6	43,668	8.3	527,682	100.0																																																																															
	2022	431,013	80.9	37,263	7.0	64,754	12.1	533,030	100.0																																																																															
과 태 료	2020	1,372	48.1	-	0.0	1,479	51.9	2,851	100.0																																																																															
	2021	231	13.8	-	0.0	1,445	86.2	1,676	100.0																																																																															
	2022	121	6.9	-	0.0	1,635	93.1	1,757	100.0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16) 디지털포렌식 운영 성과지표 설정 방식 개선 필요	○ [지적사항] 동 사업은 디지털증거분석 사례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나 노력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 현장 상황과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음 * 현장조사 지원건수 대비 디지털자료 분석 보고서 건수 비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 디지털포렌식 운영 성과지표인 디지털증거분석 사례 비율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24년 성과계획부터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었음 - “조사과정에서의 디지털포렌식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과정에서의 디지털포렌식 활용 실적”, “사건처리에서의 디지털포렌식 활용 실적” 등의 지표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운영 성과를 내부적으로 꾸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 조치완료일 : 2024년 2월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17) 국회의 예산심사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등	○ [지적사항] ‘청년소비자 역량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사업은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이는 국회 예산안 심사 시의 감액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함 -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시 동 사업의 내역인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사업은 정부안 4억 9,400만원 대비 4,600만원이 감액되어 4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2년에 6억 4,200만원이 집행되어 정부안보다 많은 재원이 투입되었음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사업은 봉사단 관리자 인건비 등 국가 재원을 투입하여 봉사활동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봉사활동의 자발성 원칙을 기반으로 하도록 사업 추진체계 변경이 필요함 - 동 사업은 한국소비자단체협회가 봉사자와 봉사 수요처를 매칭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청년소비자 리더나 중고등학생이 현행 자원봉사체계를 통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예산안 심의 시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재정을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교육봉사 활동 사업의 수행 관련 봉사활동이 자발성 원칙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에 필요 정보 제공·지원 방향으로의 사업 추진체계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소비자리더 및 중고등학생 봉사자 참여 실적 저조 문제를 개선할 것(주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	○ 국회에서 타 부처 등의 디지털 교육*과의 중복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4년 정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전액 삭감됨 * 과기부의 「디지털 배움터」, 방통위의 「노인 미디어 교육」, 공정위의 「노인 소비자교육」 등 ○ 향후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시정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18)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실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소비자상담센터의 일반상담 및 피해처리 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 당초 예산액 대비 2020년 16.6%(4억 8,600만원), 2021년 27.0%(8억 6,100만원), 2022년 24.5%(6억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측 및 실제 상담건수 (단위: 건) <table><tr><th colspan="2">구분</th><th>2018년</th><th>2019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r><tr><td rowspan="3">일반 상담</td><td>예측(a)</td><td>353,965</td><td>429,111</td><td>430,000</td><td>450,000</td><td>350,000</td></tr><tr><td>실적(b)</td><td>398,080</td><td>401,117</td><td>305,830</td><td>290,440</td><td>235,301</td></tr><tr><td>예측오차(a-b)</td><td>△44,115</td><td>27,994</td><td>124,170</td><td>159,560</td><td>114,699</td></tr><tr><td rowspan="3">피해 처리</td><td>예측(a)</td><td>75,848</td><td>99,125</td><td>98,000</td><td>120,000</td><td>120,000</td></tr><tr><td>실적(b)</td><td>87,684</td><td>116,550</td><td>107,061</td><td>102,085</td><td>100,466</td></tr><tr><td>예측오차(a-b)</td><td>△11,836</td><td>△17425</td><td>△9,061</td><td>17,915</td><td>19,534</td></tr></table>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 상담	예측(a)	353,965	429,111	430,000	450,000	350,000	실적(b)	398,080	401,117	305,830	290,440	235,301	예측오차(a-b)	△44,115	27,994	124,170	159,560	114,699	피해 처리	예측(a)	75,848	99,125	98,000	120,000	120,000	실적(b)	87,684	116,550	107,061	102,085	100,466	예측오차(a-b)	△11,836	△17425	△9,061	17,915	19,534	시정	○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상담 만족도 조사를 해피콜 방식으로 실시 중임 - 상담원이 전화상담을 종료하고 상담 등록을 완료한 시점에 해당 소비자에게 만족도 조사 URL을 SMS로 발송 - 해피콜 실시 이후 '22년 대비(3.90점) 0.25점 상승하였음 * 2023년 1월부터 해피콜 실시 ○ 1372소비자상담센터 시스템 고도화 추진 - PC 기반인 시스템을 스마트폰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브라우저 종속성 제거 및 접근성·호환성을 준수하여 유연한 시스템 운영체계 구성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24년 1월 24일)하여 '25년~ 신규 예산 편성 추진 ○ 소비자상담센터 홍보예산 편성 추진 - 소비자상담센터 업무를 소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인지도 제고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24년 1월 24일)하여 '25년 신규 예산 편성 추진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24일	조치완료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일반 상담	예측(a)	353,965	429,111	430,000	450,000	350,000																																											
	실적(b)	398,080	401,117	305,830	290,440	235,301																																											
	예측오차(a-b)	△44,115	27,994	124,170	159,560	114,699																																											
피해 처리	예측(a)	75,848	99,125	98,000	120,000	120,000																																											
	실적(b)	87,684	116,550	107,061	102,085	100,466																																											
	예측오차(a-b)	△11,836	△17425	△9,061	17,915	19,534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19) 실현 가능한 규모의 수탁용역사업 예산편성 및 기타수입 점검 필요	○ [지적사항] 한국소비자원 수탁용역 사업은 2022년 수입에서 결손이 9억 8,500만원, 지출에서 집행잔액이 8억 4,500만원 발생하였고, 1억 4,000만원의 순결손이 발생하였음 - 이는 당초 계획된 수탁용역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데 따라 예산액과 지출액이 과다 계상되어 생긴 문제로 보이며, 기관 사업비 등 재정운용의 규모 왜곡 및 수입 결손 발생의 우려가 있음 한국소비자원의 자체수입원 중 기타수입은 최근 3년의 수입 실적은 연간 1억 4,000만원 수준임에도 과거('17~'19년) 특이 소 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결산 실적을 토대로 예산액이 편성(6억 100만원)되어 수입 결손이 나타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수탁용역 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의 과다 계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과거 일시적 요인으로 반영되었던 수입원이 과다 계상되고 있는 기타수입을 점검하여 수입 결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	○ '24년 수탁용역 수입예산 편성 시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실제 수행 예정인 사업의 예산을 반영(1,660백만원) ○ 과거 기타수입의 일시적 증가 요인 및 최근 수입 실현 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였으며, 적정한 수입예산이 편성되어 수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29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7.31)
(20) 민간단체 보조금 부적정 집행 주의 필요	○ [지적사항] 최근 3년간('20~'22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감사 실시('23.1~3월) 결과, '2020년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행사' 사업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지원액 중 500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적발되었음 - 코로나19로 행사 개최가 곤란하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른 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나눔 행사,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세미나)으로 400만원을 집행함 - 2021년에도 단체운영지원 사업의 보조금 중 100만원을 별도 사업인 '월간소비자 발행' 12월호 인쇄비로 사용함 ○ [시정요구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단체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주의할 것	주의	○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보조금 환수 처분('23.5.) 및 제재부가금 납부처분('23.7.)을 완료함 - 다만, 해당 보조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분할납부 요청*을 하여 분할납부에 따른 납부 재통지 실시('23.12.28.) *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3년간 분할 납부 - 총 징수액(18백만원) 중 1차 납입분(2.8백) 납부완료('23.12.28.) - 향후 잔액에 대해서는 국고로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엄중 관리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28일	조치완료